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는지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우선, 직접적인 피해로서 수많은 생명의 상실과 인권유린을 들 수 있다. 국보법이 제정된 이듬해인 1946년 한해만 해도 11만 8621명이 검거·입건되었고, 132개의 정당·사회단체가 해산되었다.<sup>2)</sup> 한국전쟁중에는 국가보안법이 ‘특별조치령’과 함께 적용됨으로써 엄청난 ‘부역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기간중 부역자로 처리된 사람이 55만 915명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어느 정도가 어떤 종류의 처벌을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1950년 11월 25일 현재 867명의 사형선고자가 집계되었다. 한국전쟁중에 있었던 부산정치파동중 야당에 대한 국제공산당사건 조작사건으로 보수야당 정치인들마저 수난을 당했으며, 진보당의 조봉암 등 진보인사들이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1958~61년 사이에는 593명이 재판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53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쿠데타로 권력을 받은 군부세력에 의해 특수반국가행위죄로 모두 833명이 입건되었고 그 가운데 191명이 혁명재판소에 기소되었다. 반공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1980년까지의 20년 동안 모두 6135명(국보법 1968명, 반공법 4167명)이 검거되었으며,<sup>3)</sup> 5공하에서는 1521명이 재판에 회부되었고 그 중에서 13명이 사형 28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sup>4)</sup> 6공하에서는 모두 1730명이 구속되었으며, 문민정부에서는 1972명이 구속되었고, ‘국민의 정부’하에서는 작년 10월말까지 311명이 구속되었다. 아직도 간혀 있는 양심수 405명 가운데 249명(61.1%)이 국보법위반 혐의이다.

요약하자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68만 2700여명이 구속되었으며,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지내거나 죽음을 당했다. 죽음을 당한 사람은 물론, 구속되었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사람들도 ‘이근안식’ 고문이나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야 했으며,<sup>5)</sup> 고문이나 인격적인

2)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좌익사범’에게는 엄벌이 가해졌으나, 그 수가 너무 많아 ‘선도·교화하여 전향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국민보도연맹’과 1차개정 국가보안법상의 ‘보도구금’과 ‘보도소’ 설치로 나타났다. 국민보도연맹에는 30만명이 넘게 강제로 가입되었고,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한국전쟁 중에 집단학살 당했다. 또한 고문이 횡행하여 사건조작이 부지기수였다.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18쪽.

3) 다른 자료에 의하면, 1964년에서 1979년 사이 국보법과 반공법으로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은 2331명, 4196명이라고 한다. 권오현, 「세계인권선언과 보안법」, 《한겨레신문》, 1998.12.4.

4) 1984년 7월부터 1987년 6월까지의 3년 사이 1025명이 국보법으로 입건되었는데, 이 가운데 70.8%가 구속기소되어 78.6%의 기소율을 보였다. 한편 12.6%가 기소 유예처리되었다. 박원순, 앞의 책, 1992, 37쪽.

5) 민가협 남규선 총무에 의하면, “89년 3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사건을 계기로 공안정국이 형성되면서 국가보안법 관련 기소자 수도 88년 104명에서 89년 312명으로 세배나 뛰었고 기소자 수만큼 고문

수모 이외 다른 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희생을 당했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인적 손실과 고통 이외 간접적인 손실도 실로 엄청나다. ① 첫째, 집권세력 또는 지배클럭에 도전적인 진보(또는 계급)정치세력, 심지어는 합리적 자유주의세력의 지도부와 주요 구성원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함으로써, 조직을 왜해시킴은 물론 일반대중들에게 공포감을 주어 그들이 대중속에 뿌리를 내릴 수 없게 하였고, 결국 해체되거나 약화되게 만들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진보당사건이지만, 이외에도 유사한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제도정치권에서 진보정치세력은 물론 합리적 자유주의세력조차 존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정치는 극도로 왜곡되었다. 진보세력의 존재에 의해서만이 보장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과,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우리는 가질 수 없었다. 또한 진보세력과 합리적 자유주의세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반대세력과의 생산적 경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자체적으로 교정될 수 있는 기회와 능력(민주주의적 절차와 방법에 의한 갈등조정능력과 공동체적 목표의 설정·실천 능력)을 상실하였다.<sup>6)</sup> 그리고 다양한 이념적 정책적 대안을 통한 생산적 경쟁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지역주의 등 연고주의에 호소하는 보수정치세력들이 정치판을 독점하게 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보안법은 합리적 반대세력과 정책적 대안의 등장/제시를 어렵게 만들어 결국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② 국가보안법의 존속과 적용에 따른 또 하나의 간접적인 손실은 친일세력과 탈법(쿠데타) 부패집단이 온존할 수 있게 했으며 그 결과 우리 사회가 민족주체성을 상실하고 부패와 탈법(편법)으로 만연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친일(또는 친미)민족반역자집단이나 탈법(쿠데타)집단은 국가보안법(반공)을 도구나 명분으로 하여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국가권력을 획득하였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반민족적 행각이나 탈법행위로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권력을 장악했다는 약점 때문에, 지배클럭은 다른 집단이나 일반국민의 부정부패·탈법행위를 간접적으로 부추기거나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탈법 또는 편법주의 또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었고, 그것은 다시

피해 사례도 늘어났다”며 “그땐 일단 끌려가면 고문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민가협이 사노맹사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등 굵직굵직한 고문 피해 사례를 모아 94년 검찰에 기소한 것만 66건에 이른다. 김영삼정부 이후 고문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줄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 하에서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플라스틱 물병에 물을 채워 온몸을 때리거나 종이뭉치 따위로 머리를 때려 외상(外傷)을 남기지 않는 신종 기법들이 등장했다고 한다. 《한겨레신문》, 1999.11.2.

6) 조희연,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1998, 18쪽 참조.

각종 대형참사와 부실경제의 근원이 되었다.

③ 국가보안법의 존속과 적용에 따른 또 다른 간접적인 손실은 국가보안법의 집행기구인 공안기관(경찰청 보안국, 중앙정보부/안기부/국정원, 공안검찰)의 과대성장과 비민주적 운영으로 말미암은 국가예산과 인적 자원의 낭비를 들 수 있다. 조직이론에 의하면, 모든 조직은 일단 형성되면 존속하려는 성향과 동시에 팽창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1946년 이후의 경찰과 검찰이 그랬고, 1960년대에 조직된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가 그랬다. 공안기관이 사용한 정부 예산과 공안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그러나, 1991년에서 1996년 사이 정부세출의 기능적 분류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이라는 항목에서 추측해 보기로 하자. 이 항목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4.5%(1991년) 내지 5.3%(1994년) 정도로 결코 적지 않았으며, 또한 그 적지 않은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났다.<sup>7)</sup> 같은 기간 보건예산은 1.8%(1995년) 내지 2.4%(1991년)이었고, 사회보장 및 복지에 할당된 예산은 7.9%(1992년과 1993년) 내지 9%(1996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공안기구에 배정된 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sup>8)</sup>

④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간접적인 손실은 국가보안법과 그에 근거한 진보인사에 대한 탄압과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은 남북대립을 격화시키고, 그에 따라 군비팽창을 가져온 점을 들 수 있다.

### 국가보안법으로 지킨 것

앞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속과 적용으로 말미암은 직·간접적인 손실을 살펴보았다. 자료 부족과 적절한 방법 미개발로 말미암아 국보법의 존속과 적용에 따른 손실을 완전히 밝혀낼 수도 없고 수치로 표현하기도 어렵지만, 대충 짐작컨대 실로 엄청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국가보안법의 존속과 적용으로 해서 얻거나 지킨 것은 무엇인가? 먼저, 역대 집권세력이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적용을 통해 지키거나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직접 그들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자.

7)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1998』, 382-383쪽. 잘 알다시피, 공안기구(특히 안기부/국정원)에 배정되는 예산은 여러 부처의 예산에 뒤섞여 숨겨져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확한 공안예산을 파악할 수가 없다.

8) 불행하게도 공안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는 확인할 길이 없었음을 밝힌다.

### 지배블록이 지키고자 했던 것

1949년 말 당시 법무부장관이 국가보안법 1차 개정안을 제안·설명하는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의 ‘공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작년(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으로서 사법당국에서는 좌익공산분자를 박멸하는 소재로 썼습니다. 그 공로는 지극히 큽니다.”<sup>9)</sup>

1958년 11월 중순 당시 이승만정권은 소위 언론조항 등을 추가한 더욱 강력해진 국가보안법 3차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동법은 그 제1조, 제2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침칭하는 결사 또는 집단과 기타 범죄단체를 단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전문 6조로서 규정형식이 단순하여 6·25사변 이후의 착잡한 정세 특히 현재 북괴의 전쟁에 의하지 아니한 침략을 의미하는 위장평화통일공작을 주임무로 하는 간첩과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범죄를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법조항이 결여되어 국가변란행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방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항의 불비는 자칫하면 인권옹호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북괴의 흥계를 철저히 분쇄하는 동시에 인권옹호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는 것임.”<sup>10)</sup>

4·19직후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2·4파동 때 개악된 국가보안법을 대폭 손질하여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상당히 배제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1년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를 포함한 군부세력이 1961년 6월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반공법을 제안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법은 국가재건사업의 제1목표인 반공체제를 강화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자나 이들에 대해서 협조하는 자 등을 일반법보다 무겁게 처벌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제안”한다는 것이다.<sup>11)</sup>

반공법을 제정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1962년 9월 박정희 군부세력은 반국가적 범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5년내에 다시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경우 그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그 이유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

9) 대한민국 국회, 제헌국회 제5회 「제56차 회의록」, 1382쪽. (박원순 1989, 106)에서 재인용.

10)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국가보안법 의안카드’, 9-10쪽. (박원순 1989, 130)에서 재인용.

11)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반공법 의안카드’, 1쪽. (박원순 1989, 197)에서 인용.

가적 범죄에 대하여는 상당히 중한 형으로 처벌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도 미전향자에 의한 반국가적 범죄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반복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특히 그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하여 보다 중하게 다루게 함으로써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sup>12)</sup>

반공법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아무런 국민적 대표성을 갖추지 않은 국가보위법회의에서 이루어진 제5공화국의 국가보안법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국가보안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된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에 통합규정하여 양 법률상의 유사 또는 동일 규정을 단일화하면서 그동안의 법적용을 통하여 드러난 새로운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보다 공고히 규제하는 한편 7·4남북공동성명에 입각한 비적성국가에 대한 문호개방정책에 따른 관계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sup>13)</sup>

### 지배블럭이 국가보안법으로 실제로 지켜온 국가나 지배질서의 특징

방금 보았듯이,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하여 집권세력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국가의 안보 내지 안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잘 알고 있듯이, 국가는 중립적이거나 그 자체로서의 절대선(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시민사회내 집단들이 계급이나 인종 등으로 분열되어 서로 적대관계에 놓여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집권세력이 지키려고 해왔고 지켜온 국가의 사회적 성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배질서의 특징을 보기로 하자.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요소들만 추출해 보자. 경제체제는 기술, 시장, 자본에 있어서의 높은 대외의존과 경유차에 의한 자본축적으로 독점기업화한 대기업 중심의 (한국식) 자본주의체제이고, 정치체제는 미국을 최상위 동맹자로 하고 카리스마적 독재자·관료집단(특히 경찰)·군부·한국독점재벌을 하위 동맹자로 하는 지배블럭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을 표방하고 있으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에도 못미치는 체제이다.<sup>14)</sup>

12)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국가보안법 의안카드’, 17쪽. (박원순 1989, 205)에서 인용.

13)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국가보안법 의안카드’, 18-19쪽. (박원순 1989, 208)에서 인용.

14) 역대 정권의 사회경제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많다. 신식파시즘, 관료적 권위주의국가, 이완

다음,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진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를 장악,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역사적 특성을 보자. 이승만정권의 경우 지배블럭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족(또는 한국 국민)을 살인, 고문, 또는 밀고해온 친일민족반역자나 미국인이었고, 박정희 정권 이후 김영삼정권 때까지는 5·16군사쿠데타로 살아남은 민족반역자와, 탈법과 부정을 일삼는 영남출신 엘리트(상위 동맹자)와 경인지역과 충청지역 출신의 엘리트(하위 동맹자)로 하는 반(反)호남 지역패권주의자들이 지배블럭의 주요 구성인자들이었다.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적용으로 해서 지켜온 국가와 지배질서가 친외세 민족반역자나 탈법·인권유린·부폐·비합리적 행위자들의 기득권을 온존시켜주는 그런 것이라면, 그런 국가와 지배질서는 과연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보수진영의 논객들은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호하고 나아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장악해온 국가는 지킬만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국가보안법 등을 동원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한 사회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우선, 이들이 저지른 죄악이나 일반국민들이 치른 희생과 고통을 무시하고 있으며, 다음, 지금과 같은 우리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최선의 것이었다 또는 최선의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최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sup>15)</sup>

###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필요한가

방금 본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친일민족반역자나 친미파, 극우반공주의나 지역주의 또는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지배집단들과 이를 매개로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미국(과 일본)의 지배집단이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주로 활용되었다. 즉, 국가보안법 덕택에 이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

된 신식파시즘 등 실로 다양한 규정들이 있다. 그러나, 그 핵심내용은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5) 자본주의의 우월성이 현실적으로 ‘입증된’ 것은 구사회주의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사회주의 프로젝트가 좌절된 1990년대에 들어서였다. 이전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서로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왔다. 국민(특히 피지배층)의 여론은 친(親)사회주의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반(反)자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다. 자본주의에 대한 적극적인(자발적인) 지지가 생긴 것은 3저호황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모든 인적 물적 손실은 대부분의 기층대중과 이들을 대면하려는 진보 내지 합리적 자유주의 세력에게 안겨졌다.

보통 사람이나 평상시에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지내게 된다. 그러나, 특정 집단에게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그 위력은 실로 엄청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적지 않은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의 존립기반이 되는) 반공이데올로기를 완전히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sup>16)</sup>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일부 지배블럭의 분파(한나라당, 자민련, 보수언론 등)들은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들은 첫째, 진보세력이나 합리적 자유주의 세력 또는 야당이 집권세력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둘째, 진보세력이나 합리적 자유주의 세력 또는 야당이 전혀 위협적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만을 배경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잠재적 위협세력을 염두에 두고 겁주기 위해서, 셋째, 합리적 자유주의 세력이 (자신들을 대상으로) 사정이나 개혁을 추진하려고 할 때 이를 저지하거나 그 강도나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활용하려고 한다. 물론, 정보기관이나 대공담당기관들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으로 공안사범을 많이 만들어야만이 승진도 하고 조직도 확장될 수 있기 때문 - 조직의 이익 - 관료정치모델)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다른 지배블럭의 분파나 기층대중에게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배집단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선,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기소율이 97년에 76% 이던 것이 98년에는 58.6%로 크게 떨어지고 기소유예처분은 6.8%에서 29.2%로 크게 높았다. 작년 법무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97년부터 98년 8월까지의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168명 가운데 재판에 계류중인 59명을 제외한 109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명으로 실형률이 11%에 지나지 않았고, 109명 중에서도 94명(86%)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국가보안법이 그만큼 남용되고 비효율적으로 되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제7조(찬양·고무 등)를 제외한 국가보안법의 모든 조문과 적용사례가 형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 등과 중복된다.

다음, 정부에서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경우 모순되는 행동을 이미 오래 전부터 해 왔다. 남북관계의 변화로 그 존재 이유가 상실해 가고 있다. 정부의 승인을 받고 작년 10월 소 폐를

16) 『한겨레신문』 여론조사팀과 민변이 작년 11월에 일반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결과에 의하면, 많은 국민(42.6%)들이 국가보안법의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면서도, 절대다수(79.5%)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겨레신문』, 1998.11.27.

몰고 북한으로 간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북한의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은 '장군'으로 부르는 사건이 있었다.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에게 국보법을 글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짐입·탈출(국보법 제6조)이나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통신(제8조), 자진지원(제5조), 찬양·고무(제7조) 등의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다.

정부 스스로도 국가보안법 규정에 위반되는 발언이나 행동을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다. 남북 7·4 공동성명이 그랬고,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에 입각한 남북교류의 확대도 그러하며, 올해 초에 있었던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의 "한국정부는 남북평화공존을 위해 북한의 주권국가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북한과 미국·일본이 수교하기를 희망한다"는 발언도 그렇다. 7·7선언과 그에 입각한 남북교류, 역시 곧이곧대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경우 엄청난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sup>17)</sup>

그러나, 정부당국자는커녕 정주영도 구속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 금강산 관광객들이나 방북기업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작년 10월 말까지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311명은 대부분 제7조(찬양·고무) 위반혐의를 받았다. 같은 범조항이라도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어떤 경우는 범법행위가 되고 어떤 경우는 비껴가는 모순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은 금강산 관광이 본격화되고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이 확대되어 남북간 접촉이 잣아짐에 따라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다음,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하는 보수세력들이 흔히 들먹이는 국가안보도 국가보안법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피에르 사네 사무총장의 표현을 빌자면, '진보적 정치적 견해를 지니고 그것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투옥한다고 해서 국가안보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고령의 장기수를 풀어준다고 해서 한국이 잊을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진보적 견해를 자

17) 한 논자에 의하면, 노태우정권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의 여러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북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중국·소련·북한 등과의 대표와 회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것은 그것이 대한민국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중국·소련·북한 등의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것은 정을 안 경우는 이를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보안법 제8조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 북방정책의 시행을 위해 중국·소련·북한 등의 반국가단체의 영역에서 회담하기 위해 그 지역으로 가는 행위는 동법 제6조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에 해당하는 행위로 된다. … 북방정책의 추진, 시행과정에서 중국·소련·북한 등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그들 대표의 제의를 수락하거나 또는 그 제의에 따라 어떤 합의를 하는 행위 등은 동법 제7조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김명기, 『북방정책추진에 있어 제기되는 국제·국내법적 제문제』, 국토통일원 1988, 129-134쪽.

유롭게 개진하고 토론하게 함으로써 국민통합이 용이해지고, 고령의 장기수를 풀어줌으로써 국제 사회로부터 찬사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말해주는 것은 지배블럭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서 이러한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피에르 사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사무총장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시민적·정치적 자유 없이는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존재하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만 실직했을 경우 잡혀갈 염려없이 항의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만 공산주의자로 몰릴 염려없이 자본주의를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8)</sup> 다시 말하면, 외국자본의 한국경제 지배, 빈부격차의 심화와 빙곤층의 증대 그리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한 공동체의 파괴 등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따른, 기층대중들에게 주로 가해지는 각종 고통과 모순을 해결하여 명실공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필수요건이다. 만약, 지배블럭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인한 고통과 모순을 견디지 못한 기층대중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지배블럭은 87년 6월항쟁과 같은 파국적인 결과를 다시 한번 맞게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고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검·경찰이나 감옥 등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이 뒷받침된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각인된 반공이데올로기와, 물질적 번영 또한 국가보안법이 계속 유지되고 적용될 수 있는 토양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노력은 대정부, 대정당·정치인에 대한 압력이나 설득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압력과 설득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켜야 하고, 대중들로 하여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케 만들어야 한다. ■

18) 피에르 사네, 「국보법, 인권선언 정신에 맞춰라」, 《한겨레신문》, 1998.11.30.

## 서양의 마녀재판과 한국의 국가보안법 현상

박원순(변호사)

### 1. 서론

유행은 패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시대와 지역을 휩쓰는 질병이 있다. 이 질병은 단순히 병리학상의 전염병에 그치지 않고 한 시대의 풍조나 생각, 나아가 이념도 포함한다. 중세 유럽과 초기 미국사에 나타나는 이른바 마녀재판은 그러한 질병의 하나였다. 중세 유럽의 역사에서 2백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각지에 전파되고 창궐한 '유행성 마녀병'은 백만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선량하고 무고한 부녀자의 재판과 이들 중 대다수의 목숨을 앗아갔다. 자연재해보다 더 끔찍한 인류의 재앙이었다.

그러나 중세 서양사회를 휩쓸었던 마녀재판은 끔찍한 영화의 한 장면으로나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 마녀들의 존재와 그들의 혐의를 오늘날 믿을 사람은 별로 없다. 현대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마녀에 대한 현실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것은 단지 환상의 영역일 뿐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당시의 유럽인들은 이 마녀들의 존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악행과 위험성에 대하여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무지에 따라 우발적으로 벌어진 현상만을 아니었다. 그 무지와 비이성을 자극하고 조장하며 활용한 집권자들의 추악한 음모와 악의가 자리하고 있었다. 고문자들과 이를 활용한 권리자들의 음모야말로 죄 없는 백만 마녀들에게 죽음을 선사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유럽사회를 휩쓸었던 마녀현상이 다른 형태로 재연되어 왔다. '빨갱이'라는 말 한마디로 우리사회에서 소외와 차별, 처벌과 고통을 맛보게 하는 구호였다. 마녀라는 말 한마디로 극한적인 고문과 화형의 고통에 직면해야 했던 많은 유럽인들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빨갱이'라는 레벨로 국가보안법의 형틀을 맞이해야 했던 비극적 한국인들이 우리 현대사 속에 수없이 발견된다.

중세 서양인들이 마녀의 실재를 믿고 이들의 화형에 의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공동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듯이 이 땅에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빨갱이'의 존재와 이들의 사회에 대한 위험성을 믿고 이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단되는 것을 지지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신념과 태도 때문에 수많은 동시대인이 '빨갱이'로 몰려 '마녀재판'의 희생양이 되었다.

### 2. 세계사 속의 마녀재판

#### (1) 개관

마녀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다. 마녀는 가장 오래된 인류 역사의 기록 속에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거의 모든 시기에,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마녀에 대한 공포와 신념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종족이 마녀에 관한 전설과 설화를 전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이들은 마녀를 처벌하는 법령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마녀신앙이 대규모의 마녀재판과 처형으로 이어진 것은 바로 중세유럽에 이르러서

였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세 유럽의 마녀재판으로 희생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헛벨'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독일에서만 수십만 명의 처녀들이 마녀재판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한다. '조르단 해소베'는 전 유럽에서 희생된 사람은 백만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 다른 학자는 15세기와 17세기 사이에 마녀라는 죄목으로 화형 당한 사람이 5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유럽의 마녀재판은 영국의 미국식민지에서도 재연되었다. 신천지를 찾아 나섰던 이들에게 조차 그 끔찍한 마녀재판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마녀'라는 이름으로 재판 받지는 않았지만 여러 시대와 여러 사회를 통하여 마녀재판과 같이 한 시대에 한 사회를 광기로 물아넣은 사례가 적지는 않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를지라도 인간의 이성이 마비되고 그 대신 광란의 기세가 휘몰아칠 때는 마녀재판이 보여준 사회 심리적 현상, 수사와 재판의 절차, 그 결과로서의 개인의 희생들이 함께 뒤따랐다. 세계의 마녀 재판사는 바로 인간의 이성과 우상의 쟁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 (2) 중세유럽의 마녀재판

### 가. 마녀재판의 시작과 전개

원래 마녀는 마녀사냥이 있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마녀라기보다는 주술(呪術)을 행하는 여자를 밀하는 정도였다. 이들은 "신비적 직관에다가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병자를 고치거나 여성의 다산을 돋는다거나 또는 반대로 낙태를 시키는 일"을 하였다. 이것을 사람들의 일상요구에 응하여 존재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주술사들이 마녀로 낙인찍히고 이단으로 꾹박받기 시작한 것은 14세기에 이르러서였다. 이때부터 마녀를 판별하는 지표와 기준이 생겨나고 이들을 집단적인 셋트로서 추적하기 시작하였다.

14세기를 대표하는 이단심문과 '베르나르 키'는 부부의 불화를 초래하고, 미래를 예언하며, 병을 고치는 자를 주의하라고 촉구하였다. 그 후 교황은 마녀를 최악의 이단으로 처벌하는 것을 이단 심문관에게 허가하는 한편 많은 신학자, 악마학자는 마녀에 대한 공통의 특징, 그 식별방법들을 연구하게 된다. 그 결과 14세기말에는 일종의 마녀교로서 마녀라는 집단의 존재가 자명하게 된다.

그러나 15세기까지 마녀의 소추는 극히 경미하였다. 그러나 1500년경을 경계로 하여 전유럽에 전염병과 같이 마녀의 체포와 재판, 소추가 폭졌다. 처참을 극한 마녀재판이 유럽을 휩쓸었다.

1484년에는 '마녀소추지침'(Malleus Maleficarum)이 간행되었다. 전자에는 교황이 아직 다수의 마녀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추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고 있다. 그 3년 후에 퀘른 대학의 신학교사이자 이단재판관의 저작으로 간행된 '마녀소추지침'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마녀가 되는 학설을 망라하고, 마법의 역사를 서술하며 다시 마녀를 발견하고 추적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나아가 마녀가 실제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연구한 세 권의 서적이 다. 이 책은 1869년도에 이미 29판이 출판될 정도로 베스트 셀러였다. 이 책은 점차 그림이 가미되고 나중에는 독일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였다.

점차 마녀는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절대적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마녀의 본질을 논하는 허다한 서적이 간행되고, 저명한 법률가가 악마에게 혼을 파는 계약의 성질을 연구하며, 당

시의 형법이 마법사를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로써 마녀의 실재에 대한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 마녀를 적발, 추궁하는 것은 관리와 주민의 신성한 의무이기조차 하였다. 이것이 전에 없던 마녀의 박해시대가 열린 큰 배경이었다.

마녀재판이 극성에 이른 것은 16세기 중엽부터 17세기 말 사이였다. 기록에 나타나는 마녀처단의 경과와 사례를 몇 가지 보자.

1582년 바이에른 어느 백작의 한 작은 영지에서 한 명의 마녀가 체포되었다. 이 마녀의 체포에 이어 연속으로 48명이 마녀로 낙인찍혀 화형 당하였다.

1587년 도릴 지방의 약 200여 촌락에부터 15887년부터 이후 7년간 368의 마녀가 적발되어 화형당하였다.

1590년 남독일의 소도시 네르도링겐에서 시장의 제안에 의하여 시의회는 거리를 나돌아다니는 마녀를 철저히 일소하도록 결의하였다. 이후 3년간 32명의 마녀가 화형 또는 참수되었다.

1590년 소도시 에링겐에서 65명의 마녀가 처형되었고 1597년부터 1676년까지 197명의 마녀가 화형 당하였다.

소소크만텔 僧正領(승정령)에서는 1639년에 2,428명, 1654년에는 102명이 처형되었다.

오늘날 오스트리아 영토가 된 스타이엘마르크 지방에서 1564년부터 1748년까지 1,849명이 소추되어 1,160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나노수 지방에서는 1629년부터 이후 4년간 2255인이 마녀로 소추되었고 뷔르타셴 지방에서는 1633년 이후 3년간 11명이 처형되었으며 제롯부르크에서는 1679년에 97명이 화형에 처해졌다.

튜링겐 숲에 인접한 게오르겐탈이라고 하는 인구 4천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에서 1652년에서부터 1700년 사이에 64회의 마녀재판이 실시되었다.

반베르크 승정령에서는 1627년 이후 4년간 화형 당한 마녀가 285명이었고 그 이후 30년에 걸쳐 이 재판소에 계류된 마녀재판은 900건을 넘었다. 이 승정령의 인구는 겨우 10만 명을 넘지 않았다.

뷰르스부르크 승정령에서는 1623년부터 1631년간 화형 당한 마녀가 900명에 달하였다. 1627년부터 이후 년간 29회의 재판에서 화형 당한 157명의 희생자를 보면 잡다한 연령과 계급, 직업의 사람들이 혼재해 있었다. 시의회 의원, 고급관리 등의 부인, 시의회의원의 처자, 그 지방의 가장 아름다운 자녀 그룹, 8세, 9세, 12세의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후루다에 살고 있는 바루다세르 후스라는 마녀재판관은 19년간 7백명의 마녀를 화형 시켰는데 자신의 일생동안 1천명을 처형하기를 소원하였다고 한다. 로트링겐에 살고 있던 니콜라스 레미라는 사람도 재직 15년간 화형 시킨 마녀가 9백명에 달했다고 한다.

### 나. 마녀의 개념과 그 특징

일반적으로 마녀는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원망과 저주를 받는다. 마녀는 바로 자신들에게 해악을 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럽의 마녀재판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마녀의 행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①동물과 사람을 죽거나 아프게 하는 일

②농작물을 해치는 일

③생식적 무능을 초래하는 일

④태풍을 불러오고 홍수와 가뭄을 초래하는 일

⑤버터, 치즈, 맥주의 제조과정에 개입하는 일

인간이나 가축에 접촉하면 병에 들게 하는 방법을 악마로부터 배운 마녀는 바람이나 곤충 등에게 주문을 걸어 곡물이나 과수, 가축 등에 병균을 옮기게 만든다. 마녀가 사악한 눈으로 쳐다보면 그 사람은 미쳐버린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마녀는 어떤 행위로서만이 아니라 생각만으로도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들의 죄목은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되었다.. 악마와 계약을 맺은 죄, 악마에게 예배한 죄, 악마의 꿩무니에 입맞춘 죄, 빛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닌 죄, 불법적인 악마 연회에 참석한 죄, 얼음같이 차디찬 성기를 지닌 악마 인규 비와 성교를 한 죄, 여성 악마인 서큐비와 성교한 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마녀를 가장 간단하게 식별하는 방법으로써 악마학자들은 '눈물의 결여'를 들었다. 즉 악마와의 계약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한다. 악마와 마녀는 '피의 계약서'를 만들면서 악마는 마녀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고 마녀는 생애를 통하여 악마에게 복종할 것을 서약한다. 즉 신통력은 악마에게 영혼을 판 대가로 부여받은 것이다.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방법은 보통 육체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가능하다. 악마는 남성으로 상징되기 때문에 육체적 교접을 통하여 그 악마성이 여성인 마녀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악마는 보통 멋있는 신사로 변신하여 기사, 상인, 사냥꾼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 궁핍한 여성에 접근하며 이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감언으로 유혹한다. 마녀는 십자가를 배반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 로마 카톨릭의 어떠한 권위도 부정한다. 이것이야말로 마녀를 펑박하는 도덕적, 사회적 근거가 되었다.

마녀는 생태적이며 기질적인 악마성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 마녀와 구별되는 것은 여자마법사(Sorcerers)이가. 마녀가 천성적인 것에 비하여 마법사는 마법에 의해 남을 해하는 천부적 능력은 없고 단지 필요한 기능을 배워 주문을 외운다거나 일정한 의식을 행하는 사람일뿐이다. 영국 법정에서는 마녀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를 증시하였고 스코틀랜드와 다른 대륙 국가들에서는 마녀가 악마와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에 더욱 심리의 초점이 두어졌다. 영국 법정에서는 마법사도 구체적인 해악을 끼친 경우 기소될 가능성성이 많았다. 그러나 적용현실에서 이 같은 구별은 별로 의미가 없었다. 어차피 마녀든 마법사든 고문과 조작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마법을 쓰면서도 인간에게 해악적이지 않은 많은 마녀들이 있다는 생각을 지닌 경우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다. 이른바 '흰 마녀'(White Witches)나 마술사(Wizards)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돈을 받고 질병을 고치거나 미래를 예측하거나 잊어버린 재산이나 보물의 위치를 알아 맞추는 등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언제든지 마녀로 몰릴 여지가 있었다. 먼 마을에서 자주 고객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이웃 마을의 사람들은 그녀의 위력을 두려워하여 어떤 재앙에 마을에 찾아오면 그녀를 마녀로 고소하였다. 적어도 마녀재판이 성행하던 시기에는 이와 같이 '흰 마녀'가 안전하게 활동할 여지는 별로 없었다.

다. 마녀에 대한 처벌과 재판

## 체포와 수사

마녀는 먼저 풍문에 의해 적발되었다. 누구누구가 마녀라고 하는 소문이 나고 이들을 체포하고 이웃의 부합하는 진술에 기초하여 고문에 의해 마녀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미 마녀로서 소추 받은 자가 심문과정에 자신이 아는 마녀를 지명하는 경우 체포된다. 그뿐 아니라 마녀의 자식도 마녀로 간주되었다. 그 자식들은 때로는 고문에 의해 마녀로 조작되거나, 어떤 때에는 고문도 없이 그냥 화형 당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희생자들 가운데는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유아들이 발견되는 것은 대체로 그들의 모친이 마녀였기 때문이다.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밤중에 집에 있지 않았거나 행선지를 대지 못하는 경우 '마녀회의'에 참석한 근거가 되었다. 고문을 가하는데도 비명을 지르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경우 마녀의 징표가 되었다.

체포되면서 지나치게 놀라는 모습이 마녀의 징표로 여겨지는가 하면 지나치게 차분한 것도 마녀의 습성으로 간주되었다. 결국 마녀로 한 번 의심을 받게 되면 마녀로 만들어지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셈이다.

## 규문주의 소송절차

당시에는 이태리 법학과 캐논법을 통하여 유럽 여러 나라가 이른바 규문주의(糾問主義) 소송절차를 채택하고 있었다. 이 소송절차에는 고문이 합법화되어 있었다. 마녀는 바로 이 고문의 소산이었으며 이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규문주의 소송절차의 당연한 결과였다. 15-16세기 로마법이 유럽 전역에 전파되기 전까지는 이른바 게르만법계에 속하는 이른바 형식적 증거법주의가 증거법상의 원칙이 되어 있었다. 이에 따르면 요증(要證)사실의 진실 여부는 이론상 또는 경험상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주장방법 자체에 의해 결정되었다. 진실은 주장자 자신의 선서, 또는 이웃의 선서, 때로는 결투에 의해 제기되고 인정되었다. 피고인 자산도 마녀가 아니하는 선서, 이웃의 선서에 의해 형벌을 면할 수가 있었지만, 마녀인지 여부는 수족을 묶고 수중에 던져 보아 가라앉으면 결백한 것이 입증되곤 하였다. 그러나 그 결백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이미 산 사람이 아니었다.

15-16세기경 로마법이 전래되면서 이른바 논리증거주의가 채용되었다. 요증 사실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경험상 논리상 진실인 것을 확신시키기에 충분한 증거자료의 존재를 필요로 하였다. 1532년 제정되어 18세기 말까지 독일 보통법이었던 카톨리나 형법의 증거원칙에 의하면 유죄의 증거로서 피고인의 자백 외에 2인의 증언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이에 위하더라도 범률에 정하는 정도의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고문에 의한 자백이 허용되어 이것이 마녀의 양산에 별다른 통제가 될 수 없었다.

## 고문

위와 같이 고문은 거의 모든 마녀재판의 필수적인 한 요소로 등장한다. 마녀는 결국 고문의 소산이었다. 물론 희귀한 사례가 없지는 않았다. 어떤 소녀는 자신이 마녀임을 아버지에게 자백하고 아버지가 딸을 신고하여 마녀재판에 등장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서 마녀들은 자신이 마녀라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럴 경우 위에서 본 마녀의 징표들

을 들이밀며 마녀라는 사실을 시인할 것을 강요한다. 그 강요의 수단이 바로 고문이었던 것이다.

이 당시 행해진 고문은 그야말로 "인간의 지혜를 모두 동원하여 만든 것으로써 필설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였다. 건강한 남자조차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고문이 연약한 여성에게 가해질 때 심문관이 요구하는 내용의 진술을 자인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터이다.

#### 형량과 집행

기독교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당시에는 신에 대한 반역이나 모독은 그 어떠한 범죄보다 중죄였다. 신의 적인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행위란 있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마법의 유형에 따라 달리 취급하였지만 나중에는 마녀라는 것 자체만으로 火刑, 斬首, 紞首(화형, 참수, 교수) 등의 엄벌을 받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핀란드, 스페인 등지에서 일어난 마녀재판을 1만 건 이상 분석한 로버트 무첼블래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마녀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거의 반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

#### 라. 마녀재판의 소멸

그러나 수세기에 걸쳐 광란을 연출하였던 마녀재판도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그 모습을 감추기 시작하였다. 르네상스의 진전과 더불어 이성적 세계관과 과학적 정신의 대두는 불가피한 시대정신이 되었고 이것은 신학에 기반한 과학의 해방을 의미하였다. 이로써 불합리를 극한 마녀재판도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되었다.

마녀재판과 투쟁한 사람들이 마녀재판이 극성을 부리던 그 시대에도 없지는 않았다. 아그립파 후안, 네소데스하임, 프리드리히 후안 수베 등은 "인류의 문화가 오래 기억해야 할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가장 용감하게 마녀의 존재를 부정하고 마녀재판의 종식에 큰 공적이 있는 학자는 대학교수였던 크리스찬 토마지우스였다. 그는 1701년 '마법의 죄'라는 유명한 책을 간행하였다. 그 이전의 학자들의 견해는 수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악마의 원조자가 박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저술들도 익명으로 남아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토마지우스는 합리적인 시대정신의 선두에 섰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 학자들의 견해마저 수용하여 그 책을 간행할 수 있었다.

18세기를 지나면서 마녀의 고문과 그에 따른 화형도 사라졌다. 독일의 경우 1749년에 뷔루소부르크에서 1건, 1751년 아인팅겐에서 1건, 1775년 켐텐에서 1건의 마녀재판이 기록되고 있고 그 7년 후인 1782년 스위스의 게릴스라는 지방에서 아인나 젤티라는 마녀가 고문 끝에 참수형에 처해진 것을 끝으로 마녀재판은 유럽대륙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 (3) 식민지 미국 뉴잉글랜드의 마녀재판

##### 가. 개관

"우연한 여행자의 눈으로 보면 17세기 식민지(미국)에서의 삶은 좋았다. 비록 물질적으로 아직 곤궁하였지만 미국인의 노고는 셋집에 사는 영국의 도시인이나 농노에 다름없는 농민

의 그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숲에서 매일 새로운 통나무집이 쌓고 바다로부터 땅의 경계는 내륙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땅은 풍부하였고 비옥하였다. 구세계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다."

이 아름다운 신세계에 부푼 꿈과 자유에의 소망을 안고 빈곤과 펍박과 절망의 유럽으로부터 도착한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인디언과의 전쟁, 자연의 재해와 위력만이 이들을 괴롭힌 것은 아니었다. 자유를 찾아 나선 이들에게 자유를 속박한 것은 바로 자신들의 이웃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면의 의식이 바로 가장 무서운 적이었다. 이웃을 마녀로 몰아 소동이 일고 마침내 마녀재판의 선풍이 이 신세계를 휘몰아쳤던 것이다.

광대 무변의 신대륙에서의 생활은 개척자의 일상활동을 모두 미신적 환경으로 둘러쌌다. 유럽대륙에서 막 싹트기 시작한 과학적 사고는 전혀 이곳으로 파급되지 않았다. 유럽에서 세분화된 마녀, 주술사, '백색마녀' 등의 구별은 신세계에서는 단지 "악의 어둠 속에서 일하기로 선택된 사람"으로 단순화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마녀에 대한 형벌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가혹했지만 마녀를 처단하는데 훨씬 신중하였다. 살렘재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민지의 분위기는 1백만 명을 처형한 유럽의 15세기에서 18세기에 걸친 히스테리에 전염되지는 않았다. 인명을 그렇게 허무하게 살상하는 것은 인구밀도가 희박한 미국 땅에서 사회적 경제적 낭비로 간주되었다.

미국 식민지의 초기 법률은 마녀에게 사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마녀고 사형 당한 사람은 모두 36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24명이 살렘에서, 그것도 1692년 한 해에 처형되었다.

1692년 이전에 영국 이주민의 초기 정착지였던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개별적으로 마녀재판을 받았던 사건들이 있었다. 1658년, 1662년, 1665년에 각각 마녀재판이 있었다. 1688년에는 보스톤의 존 굿윈이라는 아이가 몹시 아팠는데 그 집안의 하녀의 어머니 글로버가 마녀로 기소되어 처형되었다.

띄엄띄엄 있었던 이러한 마녀재판의 광기가 살렘마을에서 집중적으로 폭발되었던 것이다. 마녀재판이 성행한 뉴잉글랜드 지방은 청교도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한 곳으로서 일체감을 가지고 있었다. 보스톤의 가장 유명한 성직자 코튼 마더라는 마녀가 악의 사신이며 하느님과 선택된 인종, 청교도들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보내진 것이라고 강연하고 다녔다. 마녀소동은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1700년대 중반에 이르러 대서양 양안을 지배하고 있던 영어사용민족이 모두 마녀의 존재를 부인하였다. 영국에서의 마지막 처형 희생자는 1722년 옆집 돼지와 양에게 저주의 말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한 스코틀랜드 여자 도노크였다. 영어사용권역에서 마녀로 마지막 처형된 것은 1730년 버뮤다의 흑인노예 사라 바세트였다. 1736년에는 킹 제임스법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영국시민에 대한 마녀 기소는 금지되었다. 그러나 식민지법은 자동적으로 이에 다른 것은 아니어서 1768년까지 로드 아일랜드는 기소된 마녀에게 교수형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았다. 18세기까지 마녀재판이 지속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영국과 미국의 경우 비교적 빨리 그 비극이 종료되었지만 미신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마녀재판 시대는 역사속으로 흘러 들어갔고 초자연적 세계는 단지 호기심으로 대체되었다. 새로운 미국이 독립국으로 탄생하면서 식민지 시대의 마녀재판은 매우 단순한 시대의 거의 잊혀진 기억으로만 남게 되었다.

#### 나. 살렘 마녀재판

살렘 마녀재판의 히스테리는 1692년 미국의 메사추세츠 주에 위치한 살렘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의 기소와 재판에서 연출되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소녀들이 시시한 미신놀이를 즐긴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마을의 목사였던 사뮤엘 페리스의 딸 9살짜리 베티와 그녀의 사촌 11살의 아비가일은 겨울이 되면서 주로 실내에서 서인도 출신의 노예 티투바로부터 바베도스 설화와 마녀 이야기를 들으며 재미있게 놀곤 하였다. 그런데 위 두 아이가 아프자 아버지 사뮤엘 페리스는 동네 의사에게 보였고 중세적 사고에 젖어있던 의사는 병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자 사탄의 악령이 것들어 있다고 진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실어증에 걸리거나 경련을 일으키거나 중얼거리는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의 이름을 대라는 요구에 아무런 대답을 않던 이들이 나중에는 티투바와 사라 굿, 사라 오스본 세 사람의 이름을 댔다. 이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상증세를 보인 아이들의 입에서 언급되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녀 소동은 이웃마을로 확산되어 안도버 마을에서만 해도 50명 이상이 기소되었다.

심문도중에 치안판사는 여러 종류의 증거에 의존하였다. 가장 중요한 직접증거는 피의자들의 자백이었다. 미신적 속성, 특히 육체적 특징으로서 '마녀흔적'이 증거가 되었다. 그 피의자의 특이한 신체적 특징이 마녀의 징표로 간주되었다. 또한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 초인적 행태들, 예컨대 도저히 들기 불가능한 하중의 물건을 들어올렸다는 등의 사실이 마녀의 증거로 제시되었다. 상해, 질병, 재산상의 손실 등이 악마적 힘을 가진 마녀라고 단정할 신뢰성 있는 증거라고 보았다. 브리제 비숍이 처음 교수형을 당한 이래 순식간에 수십 명의 처형이 실시되었다. 살렘 지역에서의 마녀재판은 24명의 처형과 200명 이상의 구금으로 연결되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바드 대학과 그 졸업생이 이 회대의 재판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재판의 과정에서 마녀재판을 한 10명의 재판관 가운데 3명, 재판을 받은 마녀, 그리고 그 재판이 문제가 있다고 여론을 환기시켰던 사람, 마녀가 탈옥하는데 도운 사람이 모두 하바드 대학 출신이었다. 특히 하바드 대학의 학장이었던 인크리즈 마더는 이 재판에 의문을 제기하는 저서를 내어 마녀재판에 대한 올바른 여론을 환기시켰다. 마더의 아들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이 비슷한 논조의 책을 썼다. 1692년 9월 22일 실시된 처형을 마지막으로 살렘에서의 마녀소동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 마녀재판이 오판이었음을 후회하는 사람이 늘어갔다. 법원과 교회가 그 당시 행해진 부정의에 대하여 사죄하는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고 1696년 그 재판에 관여한 12명의 배심원은 참회의 성명에 서명하였다. 그 다음해 1월 14일 마녀재판의 재판관이었던 사뮤엘 새월은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수치스런 오판을 자인하고 용서를 빌었다. 마녀라고 불고 늘어져 여러 회생자를 낳았던 사람 가운데도 악마에 씌워 그런 죄악을 저질렀노라고 참회하는 사람이 생겨났다. 1711년에는 생존자들이 제기한 재심이 인용되었고 배상의 판결이 내려졌다. 살렘재판의 회생자 유족 전원에게 유족들이 요청한 배상액 전액이 그대로 인용되었다. 살렘 마을은 새로이 부임한 목사의 혼신적 노력에 의해 다시 화해와 부활의 기운을 맞았고 마침내 정상적인 마을로 되돌아갔다.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었다. 많은 학자들은 당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이하면서 생겨난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의심의 기후를 조장하였고 마침내 라이벌 집단을 마녀로 고발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살렘지역은 조선과 항해의 중심지로 등장하면서 아직도 농경지역으로 남아 있던 곳과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서녀들의 감정적 격앙이 어른들에 의해 과장되었고 이 지역의 버섯이 신체적 경련과 장애를 일으켰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이 소동을 어떻게 설명하든 살렘재판은 살렘사회, 나아가 미국사에 큰 오점으로 남았다.

#### 3. 한국의 국가보안법 현상과 마녀재판

##### 가. 개관

"만약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녀재판과 꼭 같은 방식으로 마녀를 발견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당시와 마찬가지로 많은 마녀를 적발하고 화형을 처할 수 있다. 그 방법이란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확실하게, 신속하게 목적에 도달시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되는가. 그것은 인간의 죄악 가운데 가장 愚劣(우렬)한 소산, 고문 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어떤 서양학자가 한 이 말이 바로 이 땅의 현대사에서 재연되어온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우리 시대에 존재하였던 수많은 '빨갱이'라는 말만으로도 고문이 용인되고 정당한 형사절차의 예외가 될 수 있었다. 언론도, 국민도 그러한 것쯤은 용인하였다. 이러한 방조와 방관 사이에 '빨갱이'에 대한 선동과 조작이 판을 쳤다. 억울한 회생이 잇따를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사회일각에서는 과격한 좌경용공세력이 민주화라는 가면아래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폭력과 불법과 선동으로 공산주의 세상을 세우겠다고 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폭력좌경세력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전환기에 해이해 지기 쉬운 사회기강을 엄격하게 확립함으로써 국가를 튼튼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현정권은 이사건 수사의 초기부터 매스콤을 동원하여 편향보도로 왜곡했다.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당했다. 그들은 나를 구타하고 매달아 물고문을 하고 온갖 모욕과 협박을 했다.

… 내가 용공, 불순세력이요, 좌경의식을 가졌다는 말을 정치권력이 만들어낸 것이다. 나는 관제빨갱이일 뿐이다. 빨갱이라는 누명만 벗겨준다면 나는 최후진술을 하지 않을 용의도 있다.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것이 어찌 빨갱이인가? 우리 나라의 정치학 사전에 '빨갱이'란 반독재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애국자를 독재자가 남용해서 불인 이름'라고 기재해야 오해가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이 같은 논쟁은 차라리 전쟁이라고 부를 만하였다. 이른바 '용공조작'의 거센 바람은 지난 반세기의 현대사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빨갱이'라는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뒤바꿔야 했는지 모른다. 더러는 처형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그 가족은 '빨갱이' 가족의 레텔을 부

치고 살아가야 했다.

정치·사회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율성과 자존심이 존중되어야 할 문학·학문·예술의 모든 영역에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미는 자유로워야 할 상상력과 창작성이 소진되었다. 국가보안법 현상은 중세의 마녀재판과 너무도 많은 점에서 유사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 주술과 공포 속에 우리가 살아온 것이다.

"빨갱이라는 말은 주술화되어 그 말을 뒤집어쓴 자는 저주받은 사탄처럼 증오와 공포의 대상이 돼버렸다. 아직도 이 땅에서 빨갱이라는 말은 그 역사적, 사회과학적 의미의 조명은 무시된 채 신화 속을 악령처럼 희생제물을 찾아 도처에서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도처에서 배회하고 있는 '악령'에 의해 '희생의 제물'로 선택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유럽의 중세 하늘을 날아다녔다는 이유로 화형대의 연기로 사라져야했던 마녀들과 이 땅의 저주 받은 자로 수난을 치러야 했던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유사점은 무엇인가.

#### 나. 국가보안법과 마녀재판의 유사점

너무도 기나긴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가진 중세 서양의 마녀재판과 한국 현대사 속의 국가보안법 재판은 기가 막힐 정도로 유사성을 지닌다. 그것은 권력이 무력한 개인들을 희생양으로 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그 유사성의 몇 가지 단면만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① '중죄' 의식과 공정절차의 실종

국가 보안법 사건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국민 공동의 적으로 처단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지난 시대 지배하였다. 국가보안법 사건이 중대사안이며 중죄라는 인식은 곧바로 수사 및 재판기관에서의 특별취급을 놓았고 그것은 곧바로 통상 사법절차의 해제와 엄벌주의를 놓았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피고인보호를 위한 각종의 장치는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는 해제되었고 적부심과 보석, 집행유예는 국가보안법 사건에는 대치로 해당이 없었다.

마녀재판은 이미 설명한대로 신의 모독과 기독교에 대한 배반, 악마와의 거래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한 되로 취급받았다. 엄청한 증거가 필요한 로마법 전수 이후에도 법률가들은 그 예외로 마녀에 대한 고문과 이로 인한 자백증거를 허용하였다. 일반 사건에는 허용되지 않는 고문의 반복이 마녀에게 가해졌고 마녀소추를 담당하는 자들은 마녀에 대한 예외적 범률해석에 따라 충실히 그 직무에 종사하였다. 국가보안법이든 마녀사건이든 체제자체를 부정하고 전복하는 중죄라는 생각은 바로 대량의 희생자와 극단적인 피해를 초래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정당한 재판절차마저 유린하는 근거와 배경이 되었다.

##### ② 고문의 상용

마녀라고 고백한 자백서는 많지만 자신이 정말 마녀라고 자인한 마녀의 사례는 역사 속에서 실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 고백서는 결국 엄청난 고문에 의해 만들어진 고문의 부

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 악마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자백을 하기까지 이들이 얼마나 심한 고문을 받았겠는가? 고문은 마녀로 심문받는 피의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고문의 과정을 통하여 가족과 이웃의 또 다른 희생자를 불러오게 마련이었다. 누가 자신을 마녀로 안내하였고 어떤 마녀들이 이웃에 있으며 '악마연회'의 참석자들을 대라는 수사관의 요구와 고문은 곧바로 수십 명의 연쇄적인 마녀가 그 피의자의 입에서 올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었다. 다음은 1601년 오펜부르크라는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다.

"방랑 여인 두 사람이 고문에 못 이겨 자기들이 마녀라고 자백했다. 악마의 연회에서 본 사람을 대라는 협박에 그들은 빵 제조업자의 아니 엘제 그빈너의 이름을 댔다. 수사관들 앞에 끌려간 엘제 그빈너는 마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 세 번째 매달려졌을 때 견디지 못해 그녀는 고함을 질렸다. 그녀는 다시 땅에 내려졌고 악마와 사랑을 즐겼다고 고백했다. 수사관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자백을 강요했다. … 그러는 동안 수사관들은 엘제의 딸 아가테를 잡아 왔다. 그들은 아가테를 감방에 쳐넣고 자신과 어머니는 마녀이고 빵 값을 올리기 위해 농작물을 망쳤다는 자백을 할 때까지 매질을 했다. … 종국에 가서는 그녀는 악마애인의 두 날개를 타고 악마연회에 참석했다고 고백했다. 그러자 수사관들은 그 연회에서 얼굴을 본 자들의 이름을 대라고 강요했다 엘제는 두 사람, 스피어 씨 부인과 웨이쓰 부인의 이름을 말했다. 1601년 12월 21일 그녀는 화형 당했다.

국가보안법 사건도 고문과 친한 범죄이다. 특히 간첩사건이나 조직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고문 피해의 호소가 따른다. 고문은 자백을 놓고 자백은 무고한 가족과 동료의 연쇄적 구속을 가져온다. 이른바 불고지죄까지 쳐서 한 간첩사건은 수명에서 수십 명의 구속을 부른다. 때로는 한 집안의 패가망신을 초래한다. 이른바 '송씨 일가'사건은 전형적인 예이다. 한 월 북한 가족 때문에 충청도의 한 송씨 집안은 수십 명이 구속되고 장기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절단이 나고 말았던 것이다.

##### ③ 수사관의 협박과 법정의 진실

-마가레트, 그대는 자유의지에 따라 고문으로 되어진 자백을 추인하겠는가?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받고 자백할 때, 수사관은 그녀에게 말했다. '만약 자금까지 자백한 것을 부인할 의사가 있으면 지금 나에게 말하라. 그러면 내가 더 유익하게 하겠다. 만약 당신이 법정에서 그 사실을 부인한다면, 당신은 다시 내 손아귀로 돌아와 이제까지 보다 더 지독한 꼴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돌에서 눈물이 흐르도록 할 수도 있다.' … 마르가레타가 법정에 끌려갔을 때는 그녀의 발에 죽쇠가 채워져 있었고 손에는 포승이 묶여져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 되었다. 그녀의 옆에는 간수와 수사관이 서있고 그 뒤에는 경비대가 무장을 하고 서 있다. 자백서가 낭독되면, 수사관은 그 자백서를 추인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를 묻는다."

"검찰에서는 사실의 진상이 드러나 저의 억울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었기에 나를 죽이겠다고 고문하던 수사관들이 검찰에 마저 따라와서 저의 진술을 감시하고 있었으나 저는 조서 내용은 고문과 폭행에 의해 꾸며진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건사는 부인하면 보안대에서 부인하지 왜 여기서 부인하느냐, 조서내용대로 시인하지 않으면 다시 보안대로 돌려

보내서 죽여버리도록 하겠다, 너는 재판을 않고도 죽여버릴 수 있다.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도록 하겠다며 양쪽 뺨을 후려치고 발길질을 하는데 … 이 같은 검사 행위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움이었고 무서움이었으며…”

#### ④ 자백의 증거

마녀사건에서 어짜피 증거란 자백과 이웃의 증언뿐이다. 악마연회에 참석한 증거, 농작물을 망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마녀 피의자 본인의 자백과 그녀의 평소 언동이 수상했다는 이웃 사람들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되어 유죄판결의 기초가 되었다. 결국은 자백이 마녀로 만드는 지름길이 되었다.

국가보안법 사건도 마찬가지다. 많은 조작 간첩사건의 경우 탐지하고 수집하였다든 국가기밀이 대체로 신문에 난 것이었거나 상식에 속하는 내용이었다. 간첩의 증거로 제시된 것은 혼한 라디오 등에 불과하였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여전히 피고인 자신의 자백이었다. 많은 경우 함께 잡혀온 상피고인들의 진술이 상호 보강 증거가 되었다. 결국 고문에 의해 획득된 자백이 다른 고문에 의한 자백을 보강하는 셈이었다.

#### ⑤ 이욕적인 기술자로서의 고문수사관

마녀 사냥꾼들은 마녀들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노력했고, 그로 인해 실제 마녀들이 존재하고, 또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은 위험스러운 존재들이라는 신앙을 퍼뜨리는 데 노력했다는 가정은 아주 분명한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 …(마녀들의 재산몰수, 고문과 처형비용의 청구 등) 보상들의 존재는 마녀사냥 기술자들이 광적으로 맡은 바 일을 하였던 까닭을 밝혀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경조 대공처장은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를 기념하는 5·16민족상 보안부분의 수상을 목표로 심사회에 제출할 자신의 업적 목록 작성을 수사과의 내근에게 명령했다. 최경조가 체포한 간첩은 60여명에 이른다는 책자가 만들어졌다. 그 안에는 나의 이름도, 서성수 형, 박박 씨, 허철중 군도 사진이 침부되어 들어가 있었다. 최경조의 5·16민족상 수상 축하연으로 이 해의 봄은 끝났다. …

주빈석에는 멧돼지 한 마리가 구워진 채로 눕혀져 있다. …멧돼지의 모습에 나는 연민을 느꼈다. 귀가 잘리고 배가 갈라져 술안주가 되어 사나이들의 위장으로 들어가는 멧돼지의 모습이 서성수 형이었고 나였고 허철중 군과 박박씨, 이종수군,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동포들의 모습과 겹쳐졌던 것이다.

우종일이 그리고 오희명이 전배를 선창했다. 위하여! 대 수사과의 더욱 큰 발전과 성과증진을 위해, 위하여.”

마녀재판에서나 국가보안법 사건에 있어서나 등장하는 것이 직업적인 고문전문가들이다. 이들은 고문을 통하여 마녀나 빨갱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재산적 이득과 승진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회생양으로 삼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들은 교묘한 고문과 심문의 기술을 발전시켰고 법정에서 유죄를 확보하기 위한 능란한 방법들을 고안해 냈다. 이방면에서 하나의 ‘기술자’였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고문전문가의 한사람을 1578년부터 1617년까지 뉴른베르크에서 고문으로 근무한 프랑크 슈미트라는 사람이다. 그가 남긴 일기장에는 361명의 처형과 345명의 죄수에 대한 고문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것은 그가 재임한 임기 중 몇 해동안 행한 고문의 일부일 뿐이다. 그는 퇴직할 때 시 당국으로부터 연금이 지급되었고 1634년에 죽었다. 슈미트의 일기에는 세디즘이나 잔학성이 엿보이는 구절이 전혀 없으며 매우 능률적인 일을 해낸 일개 ‘성실한 직공’으로 평가받는다.

이단심문관으로 명성을 날렸던 스페인의 프레이 토모스 데 트로케마더는 그의 스페인 이단심문소장 재직 18년 동안 10만 220명을 화형에 처하고 9만 7,321명을 고문했다. 그러나 그는 예술로서의 고문을 통하여 이단심문관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지만 자기희생과 겸양의 생활을 보냈다.

독일의 이단심문소장으로 임명된 슈르렌게르는 가장 유명한 고문과 조작의 전문가였다. 그가 죽은 후 몇 세기동안 마술 및 자백을 시키는 방법에 관한 명저로서 유명한 ‘마녀의 망치’에서 “마녀의 존재를 믿느냐 아니냐를 피고에게 묻도록 하라. 믿지 않는다고 답변하면 그것은 이단의 설이라 즉각 처형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다. 믿는다고 대답하면 자신이 마녀가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고 묻고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가하라.”는 등의 심문기술을 적고 있다. 슈르렌게르의 추궁을 벗어난 마녀는 전혀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해진 고문전문가는 역시 이근안이다. 물론 일제시대 때부터 독립운동가를 고문하던 유명한 친일경찰들이 있다. 이들은 해방후 독립된 조국의 경찰, 헌병대, 특무대 등에 다시 들어와 이 나라의 수사기관에 고문의 전통을 뿌리내리게 했다. 노덕술, 김창룡 등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 이근안은 5공시대에 민주화운동가들을 많이 고문하다가 얼굴이 알려진 경우일 뿐이다.

그는 김근태 전 민청련의장의 사건에서 지독한 고문을 함으로써 유명해졌지만 실제 미스유니버스대회 폭파음모사건, 남민전 사건, 김성학 사건, 반제동맹당 사건, 전노련 사건 등 수많은 사건에서 ‘고문기술자’로 등장했다. 전기고문과 허리꺾기에 능했다는 “그는 항상 눈에 빛발이 서 있었으며 칠성판을 자신이 발명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으며” “전기고문을 하는 도중에 부하직원을 시켜 라디오를 가져오게 하여 직접 다이얼을 맞춰 크게 틀곤 했다.”고 한다. 이들로부터 고발을 당했지만 성의 없는 당국의 조치로 아직도 검거되지 않고 있다.

#### ⑥ 이단 심문소와 정보부 또는 안기부

이단 심문소와 이단재판소는 교회와 교리를 수호하는 기구였기 때문에 엄청난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였다. 적법절차나 피의자권리가 이 기관에 의해 이 기관에 의해 존중되거나 존중해 주기를 바랄 수 없었다. 불쌍한 마녀들은 이 기관에서 제대로 변소 한번 하지 못하고 진짜 마녀가 되어 갔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한 국가의 형법체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로 인식되었다. 국가보안법 사건이 경찰, 검찰, 안기부 등에 의해 취급될 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안기부의 지휘통제 아래 있었다.

안기부는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수사의 주체자인 검찰을 사실상 오히려 ‘상명하복’관계에 두고 있었다. 국가보안법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이 가장 상위의 힘있는 기관이 되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이야말로 국가에 대한 반역이자 체제에 대한 도전세력을 처단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 ⑦ 사상의 재판

마녀재판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마녀들의 햄머'를 집필한 인스티토르와 스프링거는 "다른 사람이 꿈속에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면, 당신은 그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녀는 단지 생각만으로 남에게 해를 미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사악한 생각'도 처벌할 근거가 되었다. 마녀들은 이웃이나 동물에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아도 마녀라는 사실 자체, 마녀로서 악마연회에 참석하고 악마와 키스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했다.

국가보안법 적용의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열전 가운데는 일기에 쓴 내용이 문제되었거나 농담으로 한 대화조차도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있다. 단순히 책을 읽고 소지하는 것이 수없이 문제되었다. 몇 명의 학생들이 모여 토론한 것이 '의식화'라는 이름으로 처단된 사례는 예거하기조차 힘들다. 이른바 북한 우표수집사건이 바로 그러하였다. 단순한 자연현상조차도 마녀의 악의와 그에 기초한 결과로 몰아붙여 처단한 마녀재판의 광기와 다를 바 없었다. 이와 같이 행동만이 아니라 사상과 양심조차도 처단할 수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었다. 내면조차도 반공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꿈속에서도, 일기 속에서도, 소설의 초고에서도 허튼 소리는 허용되지 않았다.

## ⑧ 연약한 계층의 피해자

마녀재판의 피해자는 주로 어린 소녀나 중노년의 여성하였다. 77.7%가 젊은 여성이었다. 여성으로서의 마녀는 남성들이 보통 저지르는 강도, 살인이 아니라 해로운 저주를 하는 등 상징적인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 여성은 가장 연약한 계층으로서 이단심문소의 공격에 대해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국가보안법의 피해자 역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계층 출신이 많았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없었고 적용의 예외가 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언론인에서부터 예술가에 이르기까지 지식인들이 광범하게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단순한 고무·찬양조항이 적용되었고 장기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른바 막걸리 국가보안법의 경우 평범한 시민들이 대부분이었다. 납북어부, 제일 동포, 간첩사건의 경우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이었다. 이들은 제대로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조차 없었고 더욱이 자신들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변론의 기회가 없었고 중형을 선고받기가 일쑤였다.

## ⑨ 중형의 선고

위에서 보았듯이 마녀와 국가보안법 위반은 다함께 체제유지에 위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중죄로 간주되었고 중형으로 다스려졌다. 마녀들은 대체로 화형 등 극악한 형벌에 처해졌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경우에도 비교적 엄벌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사건의 사형선고 인원과 반공법사건의 사형선고 인원이 1960년부터 1987년까지 사이에 우리 나라에서 선고된 전체 사형선고 인원의 17.1%, 5.6%를 각각 차지함으로써 그 비중이 절대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형이 아니더라도 무기형,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형이 쉽게 선고되었다. 이로써 이른바

'장기수의 나라'라는 조소 어린 표현이 인권운동가들 사이에 회자되었다.

## ⑩ 이웃의 태도: 도발과 위증과 방관

마녀는 이웃의 농작물을 해치고 아이들의 유괴하고 질병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웃사람들은 마녀의 처단을 바랐다. 순진한 농민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고 해악을 끼치는 마을의 평화를 깨는 마녀의 존재를 좋아할 리가 없었다. 이 어리석은 농민들은 위정자의 失政에 다른 풍수해와 궁핍에 대한 책임을 결국 자신의 이웃, 자신의 처자에게 전가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다. 위정자와 법 집행자에 의해 만들어진 마녀의 존재는 이들에게 마녀에 대한 증오와 공포심을 심어주었고 마녀의 처형에 더욱 앞장서게 만들었다.

많은 국가보안법 사건은 이웃 사람의 신고나 고발에 기초해 있다. 특히 막걸리반공법, 막걸리 국가보안법 사건은 같은 자리에 있었거나 전해들은 이웃과 친구의 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국가보안법으로 재판 받는다는 것은 바로 패가망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수를 진 이웃사람들이 상대를 파멸시키기에는 안성맞춤의 죄목이었다. 또한 국가보안법 희생자들은 법률적 제재에 위해 공민권을 박탈당하고 평생 기관의 감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웃으로부터도 소외당하고 접촉을 차단 당하였다. 한 번 찍힌 낙인은 영원히 제거할 도리가 없었다.

마녀재판이나 국가보안법 재판은 일반 민중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역할을 특특히 해 냈다. 바로 자신의 담 너머 이웃과 마을 주민을 서로 의심하게 함으로써 虛政에 대한 투쟁과 단결의 여지를 없애고 말았다. "꺼진 불도 다시 한 번"보듯 이웃의 동태를 살피고 감시하고 고자질하게 함으로써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은 그 사회 내부 구성원을 분열시켰던 것이다.

## 다. 국가보안법 현상의 정치적, 문화인류학적 의미

마녀재판에 대해 많은 역사학자들이 단순히 16-17세기 사람들의 비이성적인 미신의 소산 또는 마녀사냥꾼이나 판사들의 잔혹성에 대한 도덕적 분노를 서술해 왔다. 레키, 한센, 레아 등의 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이성주의적 학자들의 견해에 단순히 동조하는 학자들은 없다.

오늘날 마녀재판에 대해서는 사회학자 또는 인류학자와 같이 다른 영역에서의 연구가 축적되고 가미됨으로써 보다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또는 기소자들의 신분과 지위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재판기록과 관련 문서들에 대한 분석으로 말미암아 마녀재판과 그 사회심리학적 현상에 대한 정교한 모습을 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와 분석은 결코 마녀재판의 공포감을 경감시키거나 그 잔혹성을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거 마녀재판의 기소자들의 광기와 악행만으로 설명하려는 인상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어느 인류학자는 마녀재판이 기도하였던 최종의 목적이 무엇이었던가를 추적하고 있다. 하번 마녀로 지목되면 혐의와 그에 대한 증거는 만들기에 달렸다. 위에서 본 것처럼 체포될 당시 피의자가 지나치게 냉정을 지켜도, 또는 당황해 해도 결국 마녀가 되기에는 마찬가지

였다. 즉 서로 상반되는 태도와 반응이 마녀의 전형적 특성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한 두 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수천 수만 수십만의 희생자들이 생겨난 것이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희생양이었던가?

"마녀사냥제도의 주된 결과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영주나 교황의 희생물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단지 자기들이 마녀나 악마의 희생물이라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신 네 암소가 낙태했다지? 당신 네 밭의 귀리는 잘 크지 않는다면서? 당신 네 포도가 시어겼다면서? 당신의 자식이 죽었다면서? 당신 네 올타리를 부수고 빛에 쪼달리게 하고 당신의 농토를 탐내는 자는 바로 당신의 이웃 …마녀로 변한 당신의 이웃이다. …백성들이 가공의 적들을 격퇴하는 힘찬 캠페인을 교회와 국가가 시작했다. …결국 마녀광이 지난 실제적 의미는 마녀광란을 통해 중세 후기 사회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교회로부터 인간의 형태를 취한 가상의 괴물들에게 전가시켰다는 데에 있다.

고통을 당하고 소외되고 영세화된 대중들은 부패한 성직자들이나 탐욕스러운 귀족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미쳐 날뛰는 악마들을 저주하게 되었다."

결국 가난하고 무력한 부녀자들에 다름없었던 마녀들은 교회와 국가, 성직자와 귀족들의 정치적 무능과 부도덕에 대한 전가된 책임을 지고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다. 이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대신 성직자와 귀족들은 오히려 "간파해 내기 힘들 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위대한 보호자"로서 인식되었다. 더구나 마녀소동은 "빈자와 무산자들의 가동능력을 박탈하고, 서로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조장시키고, 서로 의심하게 하고, 이웃끼리 싸우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공포에 몰아넣었으며, 불신을 고조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마녀사냥제도가 유럽에서 제 3시대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운동이 들끓듯 일어나기 시작한 무렵에 이노센트 8세가 인준하였던 거세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법광란은 종교개혁의 후유증이 남아있을 때 그 절정을 이루었다. 메시아적 사회운동과 마법광란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별로 힘들지 않은 수수께끼를 풀게 한다. 즉 마녀재판은 이러한 메시아적 사회운동의 기세를 얹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고 발전된 것이었다. 메시아적 신앙을 가진 타보르 종파나 재세례파들은 그들의 메시아 신앙 때문이 아니라 바로 마법을 사용했다는 이유 때문에 처단되었다.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틀이었다. 이 틀은 끝없이 희생자들의 요구하고 있었다. 그 틀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승진과 출세라는 작은 동기를 벗어나 국가보안법이라는 틀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하여 이 법이 지향하는 체제와 그 체제로 인하여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보호막이 된 것이다. 가끔 조직계보와 함께 큼지막한 사진으로 상징되는 사건의 발표 때마다 그 사진의 주인공들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봉사하게 마련이었다. 때로는 반공심리를 자극시켜 선서에서 안정희구세력의 표를 둑는 역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이용하여 사회에 무겁고 불안한 심리를 일으켜 쿠데타 권력의 안정과 정착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큰 간첩사건이 터지거나 간첩사건이 자주 터질 때가 대체로 이러한 정치적 목적이 필요한 때였다. 심지어는 미리 파악해 두고 있던 간첩사건을 일부러 시간이 지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터뜨리기도 하였다.

한편 기독교의 절대적 권위가 강화되면서 하나의 도그마가 되고 그에 반대되는 그 모든 것이 이단시된 것이 중세 유럽이었다. 마녀는 바로 기독교의 이단적 세력에 다름 아니었다. 동시에 남북의 분단이 강화되고 좌우대립과 상호적대가 심화되면서 국가안보의 이데올로기는 절대적 가치의 수준으로 올라갔다. 국가안보의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도그마로서 그 어떤 국민의 희생이나 기본권의 제한을 위한 명분으로도 사용될 수 있었다. 이 도그마들이 깨지는 것은 그 외의 다른 가치들에 대한 고려, 상대주의적 인식의 전환 등의 계기에 의해서이다. 신의 권리에 대한 휴머니즘의 등장에 의하여 마녀재판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의 가치 부흥에 의해 국가보안법의 위력은 악화되고 있다.

#### 4. 결론

"15세기에서부터 18세기까지 세 세기동안 벌어진 광란의 마녀재판만큼이나 공포로 가득 찬 인간 역사의 페이지는 없다."

서양의 마녀재판은 끔찍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어 있다. 유죄로 판명 나 처형된 그 수십만 마녀들을 모두 무죄였다. 그 재판 자체가 명백한 오판이었고 범죄행위였다. 고문과 자백의 강요가 빚은 이 비극적 현상은 인류의 미망과 무지, 악의 속에서 편 독버섯이었다. 많은 영사학자들이 그것은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시대에 벌어졌던 특수한 현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마녀재판은, 그 규모와 잔인성, 기간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현상이며 동시에 모든 사회가 저지를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다. 우리는 전세계를 파시즘의 광란 속에 살게 하였던 2차 세계대전 직전의 독일의 나치즘과 이태리와 일본의 파시즘, 미국의 50년대를 사상적 황폐로 몰아 넣었던 메카니즘, 드레퓌스 사건에서도 같은 현상을 본다. 그 세대의 한 희생자였던 알지에 히스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알지에 히스재판'의 해설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 시대를 주름잡은 '반공의 대의'에 편승한 조작극은 그 시대의 광기를 드러낸다. 이 영화는 그 광기의 시대를 심판한다. 30년이 지난 오늘, 메카니즘의 파오는 새삼스럽게 역사의 심판대에 오른 셈이다.

광기와 공란의 시대는 그로 인한 희생자를 냉정하게 마련이다. 집단적 히스테리에 빠진 사회와 국가가 그 구성원을 해칠 수밖에 없다. 바로 서양의 마녀재판과 우리의 국가보안법 소동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공정하고 이성적인 판단 대신에 적대와 분노, 그리고 선입견으로 한 개인과 집단에게 누명을 씌워 희생양으로 삼아 왔다. 법과 재판이라는 형식이 존재하지만 그야말로 그것은 형식일 뿐이다. 실제로는 법과 재판의 형식을 빙 야만적 그리고 사법적 살인에 다름 아니다. 그것을 통하여 무력하고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단지 무지하고 변덕스러운 대중의 홍분이나 방관에 의해 이러한 억울함이 생겨 났다기보다는 지배자의 면밀한 계획 하에 벌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다. 어쩌면 그렇게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 어쩌면 그리도 많은 점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는지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현직 국회의원과 수천 명의 노동자, 학생, 시민들을 구속으로 몰고간 이른바 국시논쟁이니 좌경 용공이니 하는 말이 횡행하고 있는 것도 이 길고 어두운 역사를 지닌 빨갱이 귀신을 다시 불러내어 그 주술적 위력을 이용해 보려는 세력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면 틀린 말일까? …오로지 권력에만 눈 뒤집힌 자들이 대다수 민중들이 갈구해 마지않는 본질을 호도하고 지엽말단의 자구 몇 개, 몇 마디 구호를 침소봉대, 왜곡 과장하여 주술로 삼고 불러들인 저 어두운 시대의 망령이 초래할 참화를 이 시대의 민중들은 또 다시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인가."

'횡행' '빨갱이 귀신' '주술' '음모' '권력' '침소봉대' '왜곡과장' '어두운 시대' '망령' '참화' 등이 간단한 인용문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모두 마녀재판의 시대를 연상케 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이 '길고 어두운 시대'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서양의 마녀 재판은 오랜 과거의 일임에 비하여 국가보안법 재판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바로 우리의 비극이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비극이다. 여전히 '고문'과 '조작', '프락치'와 '공작'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서양에서는 바로 이 재판을 통하여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는데 힘써 마침내 가장 선진적인 사법제도를 이루하였다. 그 잔혹과 처참을 극한 비극의 땅에서 인간의 과오를 줄일 수 있는 사법제도가 발전되고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라기 보다는 필연적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그러한 상황에서 수세기 전 백만이 넘는 무고한 부녀자를 화형 시킨 죄악이 더 이상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것으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중세유럽과 초기 미국사에 나타난 마녀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타산지석의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도 문명이의야만의 짓, 푸닥거리 주술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은가.

## 억압과 이탈 -국가보안법과 문화

김 훈  
(시사저널 편집국장)

지난 9월24일부터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고봉산 기슭에서 발굴된 수백구의 인골유해는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현장의 산야에 널려있다. 금정굴은 석탄 채취가 끝난 후 폐기처분된 폐광이다. 6·25 전쟁때 인민군이 패퇴한 후 진주한 경찰병력과 우익단체들에 의해서 약 1천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주민들이 적과 내통했거나 협조했거나 혹은 적과 내통한 자의 신원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등으로 집단학살되었다. 금정굴은 수직굴이다. 당시의 학살 상황을 정확히 재현할 수는 없으나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람들은 10-20명씩 수직굴 앞에 끌려가 총살되었으며, 총에 맞아 쓰러진 사람들을, 아직 총살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직굴 안으로 던져넣고, 떡시루처럼 그 위에 흙을 한꺼 뿌리고 흙을 뿌린 사람들이 다시 총살 당해서 죽음의 차례를 기다리는 다음 사람들에 의해 구덩이 속으로 던져졌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수직굴은 주민들의 시체로 가득 메워져서, 굴 자체가 사라져버렸고 그 위에 잡초가 자라나서 아무도 죽음의 현장을 식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40여년의 세월이 흘렀고, 한국은 연간 무역고 1천억불, 국민소득 1만달러의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유족들의 비통한 염원에 따라 이 금정굴의 발굴 작업이 시작된 이후 이미 3백여구의 두개골이 발굴되었고, 그 밖의 뼈 토막들은 해부학적으로 재조립하기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출토되었다. 신발 속에 들어있는 어린이의 발목 뼈와 늙은 할머니의 쪽진 머리채도 발굴되었다. 사람들을 죽일때 철사줄로 줄줄이 손목을 묶고 끌고갔던 것인지, 손목을 묶은 철사의 고리들도 무수히 발굴되었다. 유골들은 금정굴 주변의 인근산야에 킬링필드를 이루며 널려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보안법을 걱정하는 시간에도 그 유골들은 금정굴 주변에 가득 널려서 비와 이슬을 맞고 있다. 그리고 그 뿐이었다.

우리 사회는 이 사태를 수습하거나 이 사태를 사람들의 자유체제 안에서 자리잡게 할 능력이 없었다. 그 무능력은 정치적인 것이며 또 사회적인 무능력일 뿐 아니라 인식과 감성과 현실이해에 있어서의 무능력이었다. 관할 지방관

청은 처음부터 이 사태를 외면해왔으며 상급관청은 하급관청에 이 사태의 수습을 지시했다. 그 지시 사항 속에는 수습의 원칙과 방향이 제시되어있지 않았고, 하급관청은 상급관청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라는 것인지 알수 없었고, 상급관청 역시 자신의 지시사항의 내용을 스스로 알지 못했다.

유족들은 두개골 뼈 몇점을 싸서 국회의사당 앞으로 가서 농성 시위를 벌렸다. 야당이고 여당이고 간에 국회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유족들은 하는 수 없이 유골을 다시 금정굴 앞으로 가져가서 벌려놓았다. 유골들은 지금도 그렇게 널려있다. 비가 오면 유족들은 비닐로 유골을 덮어 주면서 대책없는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유족들이 정부에 요구한 것은, 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전적인 배려였다. 정부는 거절했다. 거절의 이유는 '우익단체들의 저항이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속수무책인 상태에 빠져 버렸다. 아무도 더이상 이 사태를 이야기하거나 이 사태에 대한 생각들을 심화시키거나 생각을 공유하려하지 않았다. 우리사회는 무고하게 학살당한 사람들에 대해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접어두고 서라도, 심지어 산자가 죽은 자에 대해 베풀어야 하는 최소한의 의전적인 예우 조차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그런가? 그들은 빨갱이였거나, 빨갱이로 보였거나, 빨갱이와 가까운 자들이었거나, 빨갱이를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았거나, 빨갱이를 고무찬양한 자들이었거나, 빨갱이를 숨겨준 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 국가보안법 세미나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나서 그 학살과 발굴의 현장에 두차례 가보았다. 나는 그 현장에서 오늘 내가 이야기해야 할 생각과 내용에 관한 어떤 실존적 체험이 발생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나는 아마 그같은 기대에서 실패했던 것 같다.

현장에는 몇명의 특수한 관심을 갖는 신문기자들과 관할 군청의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들과 정보과형사인 듯한 사내들과, 그리고 이제는 늙어버린 유가족들 몇명이 서성거릴 뿐이었다. 그들은 모두 '끔찍하다'고 말했다. 나역시 그렇게 말했다. '끔찍하다'는 말 이외에 어떤 생각을 계통을 세워서 정리해나갈 수 없었다. 나는 진실로 끔찍했으며, 그리고 그처럼 끔찍한 사태에 대해 다만 '끔찍하다'는 생각 밖에 할 수 없는 이 시대와 그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나자신의 역사적 운명이야말로 학살의 현장 보다도 더 끔찍했다. 나는 그야말로 무력하게도 그 뼈의 데미 앞에 소주 한잔을 올리고 절 두번을 하고 나서 물러났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도대체 우리사회가 이 사태를 어떻게 위로하고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며 무엇을 쓰다듬어야 하는지를 생각했다. 내 생각은 그러나 별 진전은 없었다. 모든 생각들은 그 유골들의 끔찍함 앞에서 좌절되고 말았던 것인데, 그들이 빨갱이였거나 혹은 빨갱이로 보였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러한 죽음에 대하여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우리사회 이웃들의 마음가짐이나 또 그들의 사체에 대해 문명한 사회로써 어떤 최소한의 의전을 표시하는 일 조차 '우익단체의 반발' 우려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들의 유골은 결국 야산에 방치될 수 밖에 없다는 이 시대의 이 무력함은 더욱 끔찍했다. 그 유골들은 마치 국민소득 1만불과 무역고 1천만달러의 시대에 그야말로 귀찮고도 돌이켜보고 싶지 조차 않은 역사의 상처처럼 불쑥 이 세상의 표면으로 돌출되어, 천덕꾸러기로써 외면당하다가 결국은 금정굴의 구덩이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지금 유골이 방치되어있는 사태와 이 사태에 대한 사회적 침묵과 무관심 그리고 정치권과 행정기관들의 속수무책은, 지난 반세기 동안 억압되고 감시받아온 인간정신의 불구의 역사를 오늘의 현실 속에서 매우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학살과 오늘의 침묵, 그리고 그 침묵 밑에 깔린 인간정신의 불구성에 관하여, 그리고 인간정신의 자랑인 문화 전체의 불구성과 무기력에 관하여 우리 사회는 아직 충분한 자기성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나의 이야기는 이 사태에 대한 나 자신의 성찰의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성찰을 유발해 낼 수 있기를, 그리고 그같은 반성의 진정성 위에서 우리사회가 억압과 감시속에서 체손당한 정신과 마음과 문화와 가치의 온전성을 회복하고 싶은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사회의 가장 강력하고도 무자비한 억압과 감시의 현실적 틀로써 작용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우리사회에서 인간의 정신과 문화에 대한 억압과 감시와 감금의 틀로써 적용된 수많은 사례들은 박원순변호사의 저서 국가보안법 연구 제2권 안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다. 국가보안법이 정신과 문화의 부문에 대해 적용된 사례는 언론, 출판, 문학, 미술, 사상, 학문, 교육등에 이르기 까지 실로 광범위한 영역에 미치고 있고, 그 적용건수는 실로 방대하다. 또 국가보안법은 문민정부에 와서도 김일성 사망후 조문과 동시에 거의 경련적이고도 발작적으로 조성된 이른바 공안정국의 시절에 경남 진주 경상대학 교과서 파동등으로 계속 맹위를 떨쳐왔다.

이 자리에서 문화 예술 사상 교육 분야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적용사례를 일일이 분석해서 제시한다는 것은 내 이야기의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박 변호사의 저서를 정독하는 것으로 이미 족하다. 나는 오히려 제1공화국 이후 반세기에 걸친 국가보안법 적용의 역사와 그 누적된 결과가 오늘의 사람들의 문화와 정신을 어떠한 모양으로 왜곡시켜 놓았던 가에 관한 나 자신의 생각을 전하려 한다. 그리고 그처럼 왜곡된 불구의 정신적 풍경은 내가 앞서 보고드렸던 저 고양시 금정굴 앞 야산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비극적으로 펼쳐져 있다.

인간의 정신은 현실을 긍정하거나 혹은 부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긍정이나 부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신이 현실 속에서의 삶을 끝끝내 부정할 수는 없으리라는 점이다. 나는 인간정신의 그같은 성향을 운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은 존재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긍정과 부정이란 궁극적으로 같은 것이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긍정할 수 있기 위하여 부정하는 것이고, 진보주의는 보수할 만한 가치들을 현실 속에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일 터이다. 박원순 변호사가 수집분석한 국가보안법 적용사례를 읽으면서 나는 국가보안법이 우선 인간의 정신작용과 그 결과물인 이른바 문화 속에서의 긍정과 부정의 역동성과 상호기능을 파괴함으로써 한 시대 전체의 정신의 모습과 기능의 중요한 부분을 불구하고 만들어왔던 점을 검증할 수 있었다.

죽은 시인 김수영은 “모든 문화는 불온하고, 모든 살아있는 문화는 더욱 불온하다”라고 말했다. 문화가 불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문화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꿈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수영의 설명이었다. 아마도 김수영이 말한 ‘불온’이라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의미의 불온은 아니었을 것이다. 김수영의 ‘불온’은 말하자면, 현실 속에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 존재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을 동경하는 정신, 혹은 결핍을 스스로 보완하려는 인간정신의 역동성을 말하는 것으로 나는 이해했다.

말하자면 그의 ‘불온’은, 문화란 미래에 있을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의 행위라는 가장 평범한 말로 이해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의 문화의 불온성이란 그 불온의 내용이 현실의 제도나 지배적 가치나 표현양식을 부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불온은 현실에서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속의 삶을 더욱 역동적으로 긍정할 수 있게 되기를 꿈꾸는 불온이다.

국가보안법의 반세기는 현실에 대한 인간정신의 긍정과 부정의 상호작용을

파괴했고 그 두 개의 국면을 적대적으로 분립시켜놓았다. 그러므로 긍정과 부정은 서로 보완하고 길항함으로써 새로운 단계로 발전된 현실을 지향하는 계기로 작용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일방이 타방을 전면적으로 제거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적대관계의 양상으로 전개되어왔다. 국가보안법은 이 한반도의 남북 적대관계를 반영하는 제도적 산물로 태어났고, 그 50년 적용의 역사는 남북 적대관계를 남한내부의 적대관계로 재생산해 내는데 기여했다. 그 적대관계는 인간정신의 긍정과 부정의 교호적 기능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데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국가보안법의 토대가 되어있는 인간관이며 현실관이며 문화관인 것임은 박원순변호사가 저서에서 제시한 여러 적용사례에서 검증할 수 있었다.

문화, 예술, 학술 분야를 규제했던 국가보안법의 적용사례들은 한결같이 문화 혹은 예술이라는 정신작용이 인간의 꿈과 열망과 동경을 표현하는 분야이며 그같은 열망의 표현을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현실의 개선을 지향하고 있는 창조적 영역이라는 점, 다시 김수영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온’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며, 그것이 인간정신의 매우 값진 운명이라는 점을

근본적으로 간파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인간정신과 현실을 적대적 이분법으로 구획하고 있으며, 그처럼 구획된 인간관과 현실관을 인간의 정신작용에 적용해왔다. 그것은 소설가 남정현의 분지 필화사건(1965)에서 화가 홍성 담의 결개그림사건(1989)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이 일관되게 보여준 태도였다. 국가보안법은 화폭 속의 구도와 표상을 혹은 색깔들과 현실의 구도를 혼동하고 있었다.

국가보안법은 현실과 예술의 관계를 차단하는데 기여해왔던 것인데 그 차단은 바로 그같은 혼동에서 기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은 현실에 대해 역동적으로 작용하려는 정신과 문화의 힘을 현실의 이름으로 배척해 왔던 것이다.

그렇게해서 나타난 문화현상을, 나는 내 이야기의 제목으로 삼은 ‘억압과 이탈’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국가보안법이 그 법의 체계 안에서 상정하고 있는 세계관은 관측소(OP) 중심의 세계이다. 권력 만이 현실을 관리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 그 법의 근본사상이다. 그 사상에 따라서 보안법은 이 세계의 가장 유리한 고지에 관측소를 설치했고, 그 관측소로부터 세계를 관찰하고 있다. 이 세계가 한개의 관측소와 여타의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한개의 관측소의 시선으로 관찰당하고 재단당한다는 현실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문화 예술 분야에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기소장 서두부분이 그처럼

장황한 복문의 논리구조로서 거대담론을 전개하게 되는 까닭은 그 관측소의 시각이 현실과 인간정신을 양극으로 나누는 분리주의, 혹은 단절주의에 입각해 있음을 말해준다.

국가보안법의 체제는 방카의 구도와 흡사하다. 그것은 좁은 관측구를 통해 세계 전체를 관찰하려 한다. 그 관측구멍을 통해 관측된 세계는 그 관측구의 논리와 가치를 통해서 재단되는 것이다. 한점의 관측구와 관측대상이 되는 여타의 세계는 분리, 단절되고 만다. 방카는 강고하고도 완강하다. 그리고 방카는 인간이 정착된 문화를 건설하는 공간이 아니라 임시로 구축된 가건물이다. 방카의 모순은 그 강고성과 임시성이다. 방카는 임시로 구축된 가건물을 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강고하고도 완강한 구조를 갖게되는 것이다. 인간은 방카를 토대로 해서 역동적인 문화를 건설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문화는 그 방카를, 문화자신의 힘으로 철거해낼 수 없을 때, 방카의 관측권 밖으로 이탈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 이탈의 문화적 현상을 나는 현실에 대한 무관심, 무기력 그리고 퇴폐라고 생각한다.

지금 경기도 고양시의 야산에 펼쳐진 킬링필드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외연은 방카의 관측권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해나간 정신의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이탈해버린 정신은 스스로 방카가 장악하는 영역의 밖에서 식함으로써 방카가 관리하는 현실영역에 대해 기꺼이 무기력해 질 수 있다. 김일성 사후에 벌어진 공안정국에 대한 사회 여론의 대응도 이처럼 방카의 관측권 밖으로 스스로 이탈해나가는 정신과 문화의 무기력을 보여주었다.

경남 창원의 지방법원이 경상대 교수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린 사건은,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기에 따라서는 당시의 공안정국 전체를 반전시킬 수 있고, 돌파할 수 있었던 계기를 이 사회에 부여했었다. 그러나 사회의 여론과 관심은 그 반전의 계기를 대체로 외면해 버렸다. 그 영장기각 사건은 그저 단순한 사법적 절차나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었을 뿐 이 사회의 정신은 그 영장기각의 의미와 효과를 증폭시키고 확산시킴으로써 공안정국의 현실에 대응하는 전략 방향으로까지 나아갈 수는 없었다.

방카가 관측소와 세계를 단절시키듯이, 방카 밖의 세계 역시 자신이 치한 세계와 방카의 관측권을 스스로 분리시킴으로써 단절의 현상을 심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세계와 방카의 단절 관계는 강화되고, 그 단절의 관계 위에서 방카의 관찰, 감시 기능은 매우 편안하게 강화되어 갈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해서 형성되는 문화는 방카의 속성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것이어서, 그 문화의 바탕에는 가건물적인 허술함과, 생존전략으로서의 완강

한 무관심, 무기력이 자리잡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방카가 관리하는 현실로부터 이탈하려는 시대의 정신은 무관심과 퇴폐로 나타나고 있다. 퇴폐는 퇴폐로써의 발랄함과 생동감과 위안과 향락의 기능을 갖는다. 퇴폐에 대하여 정돈된 생각을 전개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퇴폐는 풍속의 반대어이기도 하지만, 퇴폐 자체는 하나의 완성된 풍속이기도 하다. 서울 강남지역에 교회당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사태는 이 시대의 퇴폐를 교화할 힘을 갖고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현자유와 관련된 사회여론의 논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중심으로 밀도있게 전개되어 왔다가 보다는 오히려 마광수 기소사건이나 이른바 음란물 단속을 중심으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어왔다. '즐거운 사라' 사건 역시 분명히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된 사회의 논의는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신장에 기여했던 것이 아니라 퇴폐의 확산에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마광수 사건에 관한 논란들은 방카의 관측권을 스스로 이탈해나간 무력한 자유의 영역에서, 매우 화려하고도 발랄한 논의를 펼쳤던 표현의 자유 논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대의 문화는 70년대나 80년대의 지향성과는 달리, 공동체적 삶의 정당성을 모색하려는 방향보다는 개인의 꿈과 환상과 열망을 치열하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자리잡혀가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퇴폐는 이제 그 어떤 종교적 교육적 지도력에 의해서도 극복해나가기 어려운 풍속으로 자리잡아 가고있다. 문화의 개인화와 풍속의 퇴폐화는 그 나름대로 추구하려는 자유의 영역이 있을 터이다. 그러나 방카의 관측권 밖으로 스스로 이탈해나간 자리에서 벌어지는 그같은 개인화와 퇴폐화는 현실과 역사의 핵심적 구조에 대한 인간의 관심을 눈멀게 할 수 밖에 없다. 국가보안법 50년 적용의 역사는 거기에 저항하려는 인간의 정신을 강화시켜나간 측면이 있지만, 그로부터 이탈하려는 문화현상을 더욱 광범위하고도 보편적 현상으로 조장해놓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청준의 소설 '전깃불 앞의 방백'은 이데올로기적 질문을 제기하는 자와 거기에 대답해야 하는 자유인 사이의 고뇌를 보여준다. 이데올로기는 인간에게 '너는 누구의 편이냐, 너는 어느 쪽이냐'를 강압적으로 묻고 있다. 묻는 자는 어둠 속에서 전깃불을 쏘아대고 있다. 묻는 자의 위치는 언제나 방카 속이다. 대답해야하는 자는 묻는 자가 쏘아대는 빛의 광권 안에 여지없이 노출되어 있다. 대답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이쪽이라고 대답하면 저쪽에서 죽이고 저쪽이라고 대답하면 이쪽에서 죽일 터이다. 그러므로 묻는자의 광권안에 노

## 국가보안법 제2조 논의의 경과와 의미

김민배 (교수, 인하대 법대)

명검일 것인가 때문이다. 더 이상 권력과 지배이익의 이름으로 인권을 유린해서는 아니 된다는 상식이 필요한 지금 다시 국가보안법을 법학적으로 다시 평가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 나. 왜 제2조인가

사실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투쟁에서 국가보안법 제2조는 크게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국가보안법 제2조는 반국가단체의 정의에 대한 규정이다. 국가보안법 제2조는 '반국가단체'를 침체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결단으로서 자위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동안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주로 제7조에 집중되어 있었다. 제7조 국가보안법 개정의 핵심적 쟁점으로 등장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다.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법해석학의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법적 체계로 볼 때 단순한 개념규정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이 조항이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1997년의 국가보안법시를 되돌아보면 반국가단체 문제의 중심에는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이 있다.

여기에서는 국가보안법 제2조의 논의의 경과와 핵심 쟁점, 그리고 과제를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의 경과와 재판과정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2. 국가보안법 제2조의 논의의 시기와 경과

#### 가. 금강산 관광

- 1) 김민배, '국가보안법·반공법과 한국인권 50년', 「역사비평」, 1999년 별호, 역사문제연구소, 41~56쪽 ; 김민배,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남북관계와 국제적 환경', 「민주법학」, 제16호, 관악사, 1999, 11~38쪽 ; 정태우, '국가보안법과 한반도 평화', 「민주법학」, 제16호, 관악사, 1999, 39~62쪽 ; 김종서,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비판', 「민주법학」, 제16호, 관악사, 1999, 63~89쪽 참조.
- 2) 송소연,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민주법학」, 제16호, 관악사, 1999, 9~119쪽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김대중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사법생각, 1999, 참조.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이 상정하고 있는 질문의 방식을 "너는 누구의 편이냐"라면서 "이같은 질문은 인간에게 타당한 것이냐"로 바꿔어야 한다.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는 어떤 법적 논리를 제시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그것이 문명한 사회를 염원하는 모든 자유인의 열망이기 때문이다. 또 그같은 질문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인간의 정신은 현실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조합함으로써 역동적인 문화를 건설해나가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저 경기도 고양시의 야산에 널려있는 유골에 대한 우리들의 괴로움, 우리들의 무력감, 무력속의 편안함, 편안함 속의 수치심, 수치심 속의 절망감, 절망감 속의 분노, 그리고 그 분노 속의 무력감, 이런 비논리적이고도 학제적인 참담함을 반추하면서 나는 내 이야기를 끝내려한다.

1999년 5월 항소심 선고를 2일 앞두고 부산지검은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검찰은 반

국가단체 협의에서 이적단체 구성협의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즉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절을 알면서도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의미의 이적단체 구성 협의로 바꾸었던 것이다. 이처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매우 어舛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무죄 선고를 우려한 검찰이 공소장에 변경신청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해졌다.

1999년 5월 12일 부산고등법원 손기식 부장판사는 예초 김철이 주장했던 반국가 단체가 아닌 이적단체 구성 협의만을 적용하였다. 재판부는 합법당 건설, 노동자 정 치조직 건설, 대중정치 선동 등의 노선을 제택한 점으로 보아 폭력적 방법으로 정부를 침복하거나 국가변란을 1차적인 목적으로 삼았다고 보지 않았다. 즉 '영남위원회'를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동포돕기 성금이 북한을 수호하고, 김정일을 보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재판부는 전화 감청과 대화녹음자료, 비디오 테이프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당시 재판과정에 대한 많은 평가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법원이 증거수집 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심의한 입장을 전지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다. 특히 그 동안 시국사건의 경우 악용되던 김철과 도청수사 그리고 증거수집의 불법성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외면하던 법관들이 적법절차를 강조한 것은 인권보장과 법치주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 마. 대법원과 무죄판결

1999년 9월 3일 대법관 지창권 재판장과 대법관 변재승(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송진환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sup>5)</sup>.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기준을 제시하고, 이른바 '영남 위원회'가 반국가단체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즉 대법원은 '정부 침침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경우 반국가단체로 보았다. 이에 반해 이적단체는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명색 드나드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시대의 흐름과 무관하게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특히 '영남위원회'가 반국가단체인가 아니면 이적단체인가를 둘러싼 논쟁이나 중지조치의 문제들은 상식을 넘는 법 집행의 대표 있는 대한민국 영토리는 국가보안법의 논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던져주었다. 또한 그것은 민순한 괴itch을 넘어 남북관계에 많은 과제를 부여하고 있었다. 즉 북한이 국제법상 국가로서 승인되었으며, 바로 그 애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라는 주장에도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한편 한법체계 내에서의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충돌로 인한 법체계의 혼란과 일반인들이 느끼는 판단 오류를 정리하기 위해선도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었다.

#### 나. 영남위원회

바로 그러한 대내외적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영남위원회' 사건이 일어났다. 1998년 7월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과 울산·부산지역 시민·노동단체 활동가 등 15명 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던 것이다. 이른바 '반제 청년동맹 영남위원회' 사건이 그것이다. 김철은 이들이 1992년부터 울산지역 노동단체 및 학원기를 대상으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자아혁명조직을 구성한 뒤 합법정당 건설을 시도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사건 조작과 통신 감청에 의한 인권 침해, 그리고 북한수재민들기운동의 성격을 놓고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반국가단체인든 이적단체인든 일반적으로 조작사건에서 단골로 등장하던 조직의 강령이나 규약, 그리고 자금내역 조차 없었음에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협의를 적용하였다.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보았다.

또한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남부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당시 성금은 울산연합, 민노총 등을 거쳐 정부가 인정한 단체인 '90평화통일민족대회추진본부'와 '거제시랑·북한동포돕기 범국민운동본부'에 납부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판결의 핵심은 정부가 북한파의 접촉(교류)을 인정하였는가 여부에 의하여 이적목적(활동)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1월 10일 대법원에서 피기 환송된 '영남위원회' 사건 당시자들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부산고법 형사2부 김동환 부장판사는 김철이 공소를 제기했던 반국가단체 구성 및 기밀, 이적단체 구성, 반국가단체 친양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였 다. 그리고 피고인 중 임동식 등 4명에게는 이적표현을 소지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정순 등 3명에게는 이적단체 등의 혐의를 인정하였다.

#### 3. 반국가단체 규정의 개정논란<sup>6)</sup>

##### 가. 반국가단체와 대체입법 시도

박상진 법무부장관은 1999년 3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법무부 국정 보고

회에서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고지시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즉 대북·정책을 제작하고, 모호한 내용으로 안보와 무관한 내용까지 치발할 수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마련히 북한을 이를 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쪽으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당시 박정관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보다는 전면개정과 대체입법 마련에 힘을 실었다. 특히 야당시절의 '민주질서보호법'을 입안한 것으로 알려진 박정관은 그 법에서

6) 백승현, '1999년 국가보안법 개정을 둘러싼 경과와 생점', '제주인권학술회의 2000 자료집', 2000. 2., 161~176쪽 ; 광노현, '국가인권기구 입법과정의 중간평가', '제주인권학술회의 2000 자료집', 2000. 2.; 남관선,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현황과 과제', '제주인권학술회의 2000 자료집', 2000. 2. 참조

##### 다. 제1심 재판의 경과<sup>7)</sup>

1999년 1월 15일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권오봉 부장판사는 박정순에게 15년을, 김철현 구청장에게 징역 7년, 지적정지 7년, 나머지 관계자들에게는 3~9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공산국가건설을 위한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합법을 위장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철 등 수사기관에서 녹음테이프와 컴퓨터 디스크를 조작하고, 실제하지 않은 영남위원회를 조작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결과적으로 불 때 제1심 재판부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었다.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미친가지이지만 무죄로 확정된 후 형사보상청구권(헌법 제28조)으로 해결할 문제인가에 대해서 신의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처럼 증거나 증언 등이 없어진 경우와 달리 상황과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도 과연 법관의 무책임한 오류를 형사보상청구권으로 해결함으로서 모든 것이 종료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만약 형사보상청구권이 기본권장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의 책임면제나 양이한 재판의 도피처로 작용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 라. 제2심 재판의 경과와 이적단체

그러나 고등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김철과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컴퓨터 디스크가 운용 상당성이 반조되었다는 의혹이 정재성 변호사로부터 제기되었다. 정변호사는 이를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4) 그동안 학술논문이든 판례 평식이든 판결문이든 사건번호를 중심으로 평식이나 인용을 해왔다. 그러나 사건번호의 익명성을 감안할 때 판결의 주체인 법관은 나타나지 않는다. 학자기자기의 이름으로 글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듯이 판결의 경우에도 재판장(혹은 주심)의 이름으로 글을 발표하고 인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익명성과 은폐가 역사나 헌법과 인권을 침해하거나 해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개념이론 헌정사를 통해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표기)하는 것이 좋은기는 않은 깊토가 필요하다.

이 있었고, 아직도 휴전상태에서 남북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치하며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황론을 다수의 전의 논거로 삼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국가보안법의 원전 폐기가 가치를 국가적 불이익을 고려할 때 위헌결정보다는 한정한 결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나. 재판관 변정수와 반국가단체 이해

위의 같은 사건에서 변정수 재판관은 아무리 우리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직행법장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 및 기본권 제한 법률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았다<sup>8)</sup>.

그는 헌법 전문에서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임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에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하였고,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하여 평화통일을 헌법이념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통일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불법집단 내지 반국가단체로서 치별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철학에만 기능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치별규정의 핵심 근거로서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있으며,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해당되는 것 또한 분명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지음으로써 북한을 정부로 친칭하거나 국기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천체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여러 규정들이 헌법의 평화통일조례에 허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sup>9)</sup>. 그러나 변정수 재판관의 의견은 소수 의견이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의 부정적 측면과 이해관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 의견이기도 하였다.

8) 헌법재판소 조규광 재판장 대 정대현(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변정수의 소수의견 참조(1990. 4. 2 결정 89헌기133)

9) 변정수, 「북한이란 위험, 북한이란 위험」, 관악서, 1998. 41쪽, 이하 참조

사용하였던 기본개념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두었다. 이 경우 ‘이적단체’ 대신 ‘민족 첨예(危害) 단체’라는 개념이 사용되게 되었다. 물론 그 개념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적단체이든 민족질서 위해(危害) 단체이든 그 규정의 천체는 반국가단체이다. 즉 국가보안법이 가리키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 개념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 나. 정치권의 반발과 입법 부지위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8월 15일 평화철 경축사를 통하여 국가보안법의 개정 방침을 천명하였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2조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북한에 이로운 행위를 처벌도록 한 법이 북한을 교류의 대상으로 보는 남북교류협력법과 배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보 침해행위’를 치별하는 것으로 수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정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한나라당은 반국가단체의 개념에서 ‘정부침체’를 빼는 것은 ‘영토조항의 헌법개념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공동여당인 자민련의 입장도 비슷하였다. 물론 헌법의 평화적 통일지향원칙과 영토조항의 관계를 어렵게 해석해야 하는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아무튼 반국가단체의 개념에서 ‘정부 침체’을 제외한다는 국민회의의 방침은 공동여당인 자민련과 이당인 한나라당의 의견차이와 반대로 난항을 겪게 된다.

오히려 반국가단체 개념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도 남북교류가 가능하다는 자민련의 입장에 의해 국가보안법 개정의 문제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1999년 10월 25 일 김용갑·권익현·김 철 의원 등이 63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나라의 인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북한이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국기보안법 개정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현안이 되었다. 그리고 그 양상도 대통령과 국회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1999년 12월 4일 대통령은 여당 정체위의 장, 총무단, 국회 상임위원장 등과의 자리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의지를 피력하였다. 즉 법률의 내용에 결함이 있으며, 북한이 국가를 침침한다고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

#### 다. 대법원에서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기준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침이나 국가의 번란 그 자체를 직접 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라 함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힘입어 행위를 힘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sup>10)</sup>.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소위 ‘이적단체’라 함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친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번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라고 보고 있다<sup>11)</sup>.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목적’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장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幡적 인식으로 즉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幡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은 충족된다고 본다<sup>12)</sup>.

이러한 원리는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을 친명하고 있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승인을 받았으며,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이적단체이든 그 규정의 천체는 반국가단체이다. 즉 국가보안법이 가리키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 개념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10) 대법관 이용훈 재판장 대 남한시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 대법관 박민호 재판장 대 구국전위 사건(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121 판결)

11) 대법관 최종영 재판장 대 98조선죽우대 사건(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437 판결); 대법관 친경승 재판장 대 노진주 사건(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66 판결); 대법관 신성택 재판장 대 셀수입개방문제토론회 사건(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도1327 판결)

#### 4.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반국가단체

##### 1.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각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상의 규정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활동이 아닌 것끼지도 미치게 될 광범위한 개념이며 포괄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sup>13)</sup>.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관계없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될 만큼 불투명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을 어거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개연성은 물론, 그와 같은 자유의 천체가 되는 헌법 제19조의 암시의 자유의 침해 가능성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운영 당국에 의한 지의적 집행과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가능성은 우려하고 있다. 즉 법운영에 있어서 개관적인 지의성을 주는 것은 법칙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며,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법규의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해지면 어떠한 것이 범죄인가를 법제정 기관인 입법자가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운영 당국이 세장으로 정하는 결과가 되어 범죄주의에 위배되고 직행법장주의에 ‘자족될 소지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지향의 규정과 엇갈리기 어려운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완전 폐기에서 오는 법의 공백과 혼란도 문제지만 남북간에 일찍이 전쟁

7) 헌법재판소 조규광 재판장 대 정대현(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심판) 사건(1990. 4. 2 결정 89헌기133)

많이 일어난 것도 따지고 보면 제5열에 대한 위기 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잠재적이든 현실적이든 이를 표출시켜 의식을 반공주의로 국민을 채무상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 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반국기단체

그러나 21세기의 문제는 제5열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가운데 배제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독일 공산당 위헌판결과 관련한 냉전논리와 평면적 내용을 언제까지 이용할 것인가<sup>13)</sup>. 현행 법 이론들은 국적으로 치적되는 이적단체나 반국기단체를 헌법상 보호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법원이나 검찰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퍼시즘과 극우독재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극우세력에 대한 배제의 논리는 왜 없는가 하는 점이다. 역사적이든 상황적이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극우와 국우를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외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북한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체계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극우적 세력 또한 제5열만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체계를 위협하기 때문이니, 따라서 극우세력에 대한 법적 제재는 외면한 채 국좌 세력에 대한 법적 제재만을 고집하는 것은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정신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 라. 북한과 반국기단체

현실적으로 검찰, 경찰, 법원,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모두 반국기단체라고 치적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왜 북한을 반국기단체로 보는가에 대한 분명한 논거를 판결이나 결정문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언제나, 당연히, 그리고 전제적으로 북한이야말로 반국기단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당연히 과거 이라거나 사회정의에 반하는 악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16)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대 독일공산당 위헌판결 사건(BVerfGEs, 85 ; 1956. 8. 17. 선고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대 사회주의국가당 위헌판결 사건(BVerfGE2, 13) 참조

### 5. 빙국기단체와 쟌제 이데올로기

#### 가. 국가보안법의 이해관계

잘 아는 바와 같이 국가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법률이며, 국가의 역할은 법의 집행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재세계급의 계급적 의지가 법제 정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국가의 의지(목표)로 전화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가 법으로 표현되는 경우, 행정활동이나 시법활동을 통하여 자체계급의 이해가 관철되게 된다<sup>14)</sup>. 그리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라는 법 이데올로기적 형태로 나타난다.

국기가 특수한 사람들의 집단과 그 세 관계라고 한다면 국가적 관계들에서 특수한 인간집단이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어떠한 기능에 중심을 두는지를 통해 국가의 정치적 성격이나 내용을 알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대미의존의 심화, 법적 차원에서는 군사적 입법과 경찰법의 일체화, 국가기구에서는 군사적 혹은 정보기구의 강화, 사회적 차원에서는 반공주의를 지향하는 대중조직의 진전이 험지하게 나타난다. 그러한 영역에서 이데올로기나 이데올로그, 그 집행자가 정치적·법적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개폐 반대와 그 현실을 보면 바로 그 해묵은 이해관계에 입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즉 법률을 통해 특정한 지배계급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결으로는 악법이라 해도 법률의 속성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악당 시절 '악법 개폐'를 외쳤던 김대중 정부에서 조차 국가보안법의 개폐

에도 현제도 반국기단체인가.

판결이나 결정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논증할 법적 논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을 반국기단체로 보는 경우 발생하는 평화통일조항(헌법 제4조)과의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즉 양자가 충돌할 경우 어떤 기준과 목표를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 대한민국의 영토조항(제3조)과 통일지향조항(헌법 제4조)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하는 점이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분단과 정부의 수립,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법상의 법원칙은 물론 국제법과의 법 효력 충돌의 경우 어떠한 원칙에 의거하여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제3조와 제4조의 경우처럼 헌법조항간에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도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법관이 법을 해석하거나 법을 발전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6. 반국기단체와 기본권

#### 가. 결사의 자유와 정당제도

헌법은 결사·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결사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2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결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법률이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결사의 자유의 보장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이론적으로는 반민주적 결사, 반국기적 결사, 국제평화에 반하는 결사 등에 대하여 결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고.

그러나 법률이 금지한다고 할 경우, 그 법률은 적어도 명백히 헌법 합치적인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다. 그것이 악법이거나 위헌적 법률인 경우에도 그 법률에 의한

17)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1997, 680~681쪽 ; 권영상,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7, 469쪽 참조

#### 나. 반국기단체와 제5열

나치시대 제5열은 독일 국민과 다른 국가에서의 소수 독일인에 대한 보복주의적 영향을 차단하고, 이웃 국가나 민족들에 대한 교란작전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국가적·문화적·과학적 시설 체계를 만들었다. 즉 나치 독일에 대한 국가충성 조직이었던 이들의 주된 목적은 동방진출과 전쟁준비에 있었다. 나치독재수립 후 이러한 조직들은 번창하였고, 이러한 조직의 지도자들은 나치 당원으로서 독일 침략전쟁을 위하여 후방교란공작을 지도하였다. 그리고 군사력을 파괴하거나 독일인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제5열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여 대중적 조직으로 자리잡고 있다. 구 소련의 스탈린 폐권주의에 조응한 제5열로서 사회주의 혁명을 꾸었던 붉은 세력도 마찬가지다<sup>15)</sup>. 또한 영토회장과 민족주의를 내세운 퍼시즘의 부활을 목적으로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일삼는 제5열도 마찬가지이다. 독일의 경우 1945년 당시 전범자가 1965년경에는 이를 조직의 지도자로서 부활하여 제5열의 지도적 위치를 담당하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아무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기단체나 이적단체의 개념에는 바로 이러한 제5열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기 어렵다. 북한의 사주를 받은 붉은 세력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우리의 체계를 후방으로부터 교란시킬 위협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바로 그 제5열을 분쇄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있다는 냉전시대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 반민주라는 개념에는 반공산주의의 대결적 자세가 내포되어 있다. 어느 경우에도 북한과는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이자 현실적 위협세력이라는 경계심리가 있는 것이다. 이른바 조사사건들이 해방 후 지금까지 그처럼

13) 대법관 박준서 제평장 대 범민련남측본부 사건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도2696 판결

; 대법관 이임수 대 북한체계비디오 사건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

14) 影山川勝, 「憲法の原則と國家の論理」, 韶音書房, 1971, 162쪽 이하 참조

15) 국순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헌법해석과 헌법실천', 관악사, 1997, 44~45쪽 참조

연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물론 일반 국민들은 선거를 통하여 자신의 국가의 의사형

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감정적인 통합작용을 통하여 국가는 국민 위에 놓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국민이 주권자는 점과 자신이 국가를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런데도 국가라는 조직 뒤에 내세워 있는 계층(계급)간 이해관계를 숨긴 채, '문제 국민(이상한 소수자)'를 회생시키면서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검토가 필요하다.

## 7. 민국기와 민국민·민인권의 고지

### 가. 역사적 변천과 그 산물

국민보다도 왜 국가가 법체계 내에서 더 절대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 과정의 타당성을 지나 국가의 기원이나 본질에 대한 심각한 고민없이 국가와 정부 그리고 청권이 동일시되는 현상은 우리의 역사적 발전단계와 그 틀을 같아한다. 해방과 분단 그리고 6·25라는 불행한 현정사는 국가라는 상징적 틀의 위상을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태을로 기적 대립이 분단으로 이어지면서 생존을 위한 공동체로서의 국가성이 자리잡았던 것이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모습 속에는 화해와 상생의 법칙보다는 대결과 긴장의 역사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반공산주의'로 전락된 것도 같은 이유다. 적어도 1950년대를 거치면서 북한은 타도의 대상이자, 현실적인 적이었던 것이다<sup>20)</sup>.

그리고 1960년대 국가는 경제발전의 전인자였다. 국가주도형 발전모델을 선택하였던 대한민국에서 행정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가는 자본주의적 생존의 보루로서 인식되었던 것이다<sup>21)</sup>. 경제적 발전을 이루하면서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한국적 우월성이 찬양되었다. 경제적 낙관론이 주류를 이루면서 한국의 국가주의가 고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에는 누구의 허락을 받느냐에 따라 차별되는가의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같은 행위라도 정부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차별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정당제도나 결사의 자유가 폭력혁명으로부터 헌법적 질서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이른바 조직사건들을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는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폭력적 수단에 의한 혁명을 목표로 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결사나 단체뿐만 아니라 국우·파시즘·단체(조직)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제 현실적으로 대립되고 모순된 위치에 있는 각 세력들이 국가질서 내에 있다. 물론 이 문제와 과제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제 5월로서 활동하는 세력과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보다 강화된 사회적(사회주의적) 아니라 경제질서나 정치체제를 요구하는 세력들에까지 범국가단체나 이적단체의 협의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반헌법적이다. 우리 헌법은 어느 경우에도 국우·파시즘의 국가체제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당제도를 정당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sup>22)</sup>. 그것은 국가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과 방법을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가가 단체나 조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결사의 자유가 금지되는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이 과연 헌법 합치적인가. 또한 반민주적·반국가적·반국제평화적인가라는 개념이 지난 불화정성과 모호성에 대한 판단없이 입법자의 세 령 혹은 법관의 재량에 법형성의 기능을 빼기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에는 누구의 허락을 받느냐에 따라 차별되는가의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같은 행위라도 정부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차별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정당제도나 결사의 자유가 폭력혁명으로부터 헌법적 질서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이른바 조직사건들을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는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폭력적 수단에 의한 혁명을 목표로 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결사나 단체뿐만 아니라 국우·파시즘·단체(조직)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제 현실적으로 대립되고 모순된 위치에 있는 각 세력들이 국가질서 내에 있다. 물론 이 문제와 과제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제 5월로서 활동하는 세력과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보다 강화된 사회적(사회주의적) 아니라 경제질서나 정치체제를 요구하는 세력들에까지 범국가단체나 이적단체의 협의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반헌법적이다. 우리 헌법은 어느 경우에도 국우·파시즘의 국가체제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당제도를 정당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sup>22)</sup>. 그것은 국가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과 방법을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가가 단체나 조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결사의 자유가 금지되는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이 과연 헌법 합치적인가. 또한 반민주적·반국가적·반국제평화적인가라는 개념이 지난 불화정성과 모호성에 대한 판단없이 입법자의 세 령 혹은 법관의 재량에 법형성의 기능을 빼기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에는 누구의 허락을 받느냐에 따라 차별되는가의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같은 행위라도 정부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차별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정당제도나 결사의 자유가 폭력혁명으로부터 헌법적 질서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이른바 조직사건들을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는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폭력적 수단에 의한 혁명을 목표로 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결사나 단체뿐만 아니라 국우·파시즘·단체(조직)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제 현실적으로 대립되고 모순된 위치에 있는 각 세력들이 국가질서 내에 있다. 물론 이 문제와 과제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제 5월로서 활동하는 세력과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보다 강화된 사회적(사회주의적) 아니라 경제질서나 정치체제를 요구하는 세력들에까지 범국가단체나 이적단체의 협의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반헌법적이다. 우리 헌법은 어느 경우에도 국우·파시즘의 국가체제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당제도를 정당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sup>22)</sup>. 그것은 국가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과 방법을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가가 단체나 조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결사의 자유가 금지되는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이 과연 헌법 합치적인가. 또한 반민주적·반국가적·반국제평화적인가라는 개념이 지난 불화정성과 모호성에 대한 판단없이 입법자의 세 령 혹은 법관의 재량에 법형성의 기능을 빼기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에는 누구의 허락을 받느냐에 따라 차별되는가의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같은 행위라도 정부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차별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정당제도나 결사의 자유가 폭력혁명으로부터 헌법적 질서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이른바 조직사건들을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는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폭력적 수단에 의한 혁명을 목표로 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결사나 단체뿐만 아니라 국우·파시즘·단체(조직)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제 현실적으로 대립되고 모순된 위치에 있는 각 세력들이 국가질서 내에 있다. 물론 이 문제와 과제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제 5월로서 활동하는 세력과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보다 강화된 사회적(사회주의적) 아니라 경제질서나 정치체제를 요구하는 세력들에까지 범국가단체나 이적단체의 협의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반헌법적이다. 우리 헌법은 어느 경우에도 국우·파시즘의 국가체제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당제도를 정당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sup>22)</sup>. 그것은 국가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과 방법을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가가 단체나 조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북한은 타도의 대상이자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 나. 경제적 위기와 국가주의 강화

그러나 비틀경제가 붕괴하고, IMF제재로 들어가면서 자본주의 국가체제에 위기가 도래하였다. 사회주의 붕괴로 일컬어지는 소련의 몰락 이후 승천기를 함께 부르면 한국으로서는 침으로 당혹스러운 사태였다<sup>23)</sup>. 북한의 붕괴에 대비 토지소유권문제와 통일비용을 타령하였던 한국에게는 충격적 상황이었다. 거기에다 국제화가 단순히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적 교류의 차원을 넘어 국민국가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정을 현실화시켰던 것이다<sup>24)</sup>.

경제적 물리이 이어지면서 피해의식은 더욱 확산되었다. 특히 실업자 혁명을 우려한 정부로서는 실업대책은 물론 북한이나 사회주의적 경제질서의 침투를 막아야 하는 중적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실업자의 의식주 문제나 도산한 기업들의 처리문제를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실업자의 문제는 헌법 권리가 아닌 단순한 급부해정과 사회적 배려의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기업의 도산과 사후 처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합병이론이 동원되었다. 미국의 '음모론'에 분개하는 사람들을 소수로 몰아 부쳐면서 정부 스스로가 국제화의 담임장을 외치면서 오히려 혐역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경제체제의 붕괴가 국가체제의 붕괴로 이어지고, 그것이 국가라는 공동운영체의 앞날을 좌우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시켰다. IMF라는 경제위기상황을 거치면서 오히려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국가주의를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고 국가란 '정권(정부)'과 가정을 현실화시켰던 것이다<sup>25)</sup>.

경제적 물리이 이어지면서 피해의식은 더욱 확산되었다. 특히 실업자 혁명을 우려한 정부로서는 실업대책은 물론 북한이나 사회주의적 경제질서의 침투를 막아야 하는 중적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실업자의 의식주 문제나 도산한 기업들의 처리문제를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실업자의 문제는 헌법 권리가 아닌 단순한 급부해정과 사회적 배려의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기업의 도산과 사후 처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합병이론이 동원되었다. 미국의 '음모론'에 분개하는 사람들을 소수로 몰아 부쳐면서 정부 스스로가 국제화의 담임장을 외치면서 오히려 혐역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경제체제의 붕괴가 국가체제의 붕괴로 이어지고, 그것이 국가라는 공동운영체의 앞날을 좌우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시켰다. IMF라는 경제위기상황을 거치면서 오히려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국가주의를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고 국가란 '정권(정부)'과 가정을 현실화시켰던 것이다<sup>25)</sup>.

### 다. 유협한 소수자 회생과 제3자 지배<sup>26)</sup>

신자유주의의 이름으로 초극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제화의 소용돌이 속에

22)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인해 일본에 대하여는 杉原泰雄, 「民衆の國家構想」, 日本評論社, 1992, 142~198쪽 참조.

23) 김민배, '인천과 국제화', 「사기과학연구소논문집」, 인하대학교, 1996, 33~57쪽 참조

문제는 국가에 대한 개인의 애국심의 이름으로 개인적 인권침해를 정당화시켰다<sup>27)</sup>. 여기에서는 국가와 국민의 일체감 형성을 통하여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체에 대한 비판과 토론을 차단시키고, 국가활동에 대한 무비판적인 태도와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상을 염두에 두고 국가라는 상징에 의한 통합기법을 통하여, 국민을 주권자보다는 지배의 객체로서 조작하는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도덕적 권위나 역사적 권위로서의 상징(왕, 천황)이 혼돈하지 않는 우리 나라의 경우 가치의 원천을 국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국가와의 관계에서 그 가치의 기준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애국심이다. 본래 애국심은 개인의 자유와 관련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국가를 향한 책임으로 구체화되게 된다. 즉 그러한 한에서는 애국심이 공인과 국가 우선을 정당화시키는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다. 애국심과 사상의 자유

당연히 그곳에는 현재의 정권이나 정부에 대하여는 비판을 하지만 국가나 공동체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는 신뢰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설 자리가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애국심은 사실 양심의 자유의 문제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체계에서 국가가 편을 길라 특장한 입장은 올바른 것으로 선언하는 것이 과

(19) 물론 애국심이나 애국심을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이 있다. 그 논란의 전형은 최근 일본의 '국기·국기법'을 들여다보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山口二郎, 「日の丸」君が代法と民主主義, 「法學セミナ」, 2000年1月號, 65~68쪽 ; 内藤博史, 「國旗・國歌法と思想・良心の自由」, 「法學セミナ」, 2000年1月號, 57~60쪽 참조

18) 박병섭, '정당해산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헌법해석과 헌법실천」, 관악사, 1997, 259~275쪽 ; 국순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헌법해석과 헌법실천」, 관악사, 1997, 32~73쪽 참조

시기였다.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개정안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세정치국민회의의 개정안은 절제도 유효하다. 가파르게 국가보안법 개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올해의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지난해 제출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때의 개정안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니와, 이 글은 그 중에서도 제7조(찬양·고무)의 다른 조항들은 모두 삭제하면서도 유독 제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부분은 왜 존속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푸는 일이 이후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의 핵심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여당의 개정안에서 제2조(반국가단체) 중 “정부를 침략하거나”란 부분을 삭제하여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한 부분을 삭제하겠다고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91년의 7차 개정 시에도 당시 사회주의권의 봉파와 동구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수교라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여 이를 국가를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한 개정을 추진하였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제 북한과의 본격적인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맞는 상황에서 북한을 계속 적국으로 둘리는 것은 현 청권으로서는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제10조의 불고지죄를 삭제하기로 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조항은 이미 적용되지 않는 사문화된 조항이나 마찬가지인 때문이다. 그리고 형사 구속기간을 두 차례 더 연장하여 50일간 구속할 수 있는 조항도 어찌 보면 폐지되는 것이 당연한 추세이다.

개정안에서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던 제7조(찬양·고무)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고 있다. 우선 제7조의 모든 조항의 전제 조건이 되는 제1항(찬양·고무)과 제5항(이적표현물)을 삭제하기로 하고, 대신 제1항을 제3항(이적단체 구성·가입)에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 제1항과 제5항을 삭제하기로 하는 등 제7조의 다른 항들도 모두 삭제하면서도 굳이 제3항을 남긴 것은 대수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

왜 제7조에서 제3항만은 굳이 존속시키려 하는가. 이적단체조항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글은 바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쓰여졌다. 다시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이 불티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물음에 대한 정답 찾기는 이후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현실 속에서 보면 그것은 위험한 상황이다. 바로 이 정치적 위기를 터파하기 위하여 작동하는 것이 사법부의 정치적 기능이다.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상정되는 문제 국민(이상한 소수자)에 대한 판단은 헌법상 법관에게 맡겨져 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금박한 것은 구체적인 해결책보다 상정적인 국민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법원이 ‘공익’과 ‘국가’를 내세워 소수자를 처벌하고, 이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 것이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로 보호해야 할 범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공익과 국가의 이름으로 바로 그 소수자를 처벌하는 현실은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를 되돌아보면 이른바 ‘위험한 소수자를 희생시키면서 국민적 통합과 동질성을 강화할 때,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던 역사를 생각할 때다. 예전 민권·민족민 상황을 보호하기보다 반국기를 응호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가를 역사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

화를 강제당하는 운명을 맞고 있다. 지난 50여 년의 국가보안법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는 있지만, 그 국가보안법의 잔재는 어떤 형태로든지 남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이 법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때이며, 국가보안법의 핵심인 제7조 제3항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2. 제7조 제3항의 법률적 의미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 중 가장 많은 지적은 ‘국가안보’를 위한 법이 아니라 ‘정권보’ 법이라는 것이다. 초기 북한과 그에 동조하는 좌익세력들의 준동이라는 비상 상황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이 탄생되고 운용되었다면, 이후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내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기능하게 된다. 그 반정부세력을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제7조(찬양·고무)였다.

1958년의 이승만 정권에서 발생한 이른바 ‘보안법’ 파동에서 단초가 되어난 제7조는 이후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제정된 반공법 제4조에서 그 원형이 그대로 나타났고, 이후 1980년에 국가보안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승계되어 오늘에 이르렀다<sup>2)</sup>. 7차에 따른 국가보안법 개정(改訂)는 사실 이 제7조의 강화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7조의 각 항의 구조를 보면 제1항● 기본적 구성요소이고 제3항과 제4항은 가중적 구성요소이며, 제5항은 행위수단의 특징(말이 아닌 체화된 표현물)을 반영한 특별한 구성 요건이라고 한다<sup>3)</sup>.”

- 1) 1958년의 이승만 정권에서 발생한 이른바 ‘보안법’ 파동에서 단초가 되어난 제7조는 이후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제정된 반공법 제4조에서 그 원형이 그대로 나타났고, 이후 1980년에 국가보안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승계되어 오늘에 이르렀다<sup>2)</sup>. 7차에 따른 국가보안법 개정(改訂)는 사실 이 제7조의 강화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2) 김종서(1999),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대화적 접근’, 『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 시 안,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공동주최, 8쪽.
- 3) 김종서(1999), ‘국가보안법 폐지론 : 제7조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세정치국민회의(현 새천년민주당) 인권위원회·정책위원회 주최, 자료집 37~38쪽에서 제인용. 김종서의 이 논문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문제점을 가장 잘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 4) 제7조(찬양·고무등)의 각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자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친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의한 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간진영의 주장이 세도권의 핵심부에까지 논리를 일으킨,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간진영의 주장이 세도권의 핵심부에까지 논리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1999년은 국가보안법 개폐 운동에서 획기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 1. 왜 제7조 제3항이 문제인가

### 국가보안법의 핵심인 제7조 제3항의 본질<sup>1)</sup>

- 1990년대 이적단체 사건을 중심으로 -

#### 인권운동사랑방

1948년 제정이라 1999년은 국가보안법으로서는 최고의 시련기였다고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 논의는 그 법의 제정 시기부터 이어져 오는 것이었고, 인권운동, 통일운동 진영을 비롯한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늘 이 법의 개폐를 주장해왔던 것이 사실임에도 그런 주장은 늘상 세도권 내의 논의로 이어지기는 힘들었다. 그런 데 지난 한 해 동안 정부로부터 세도 언론, 시민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보안법을 들리쓰고 심각하고 진지한 토론풍을 전개되었다. 그간 인권,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간진영의 주장이 세도권의 핵심부에까지 논리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1999년은 국가보안법 개폐 운동에서 획기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더욱이 지금껏 국가보안법을 정권의 유지수단으로 삼아왔고, 그 법의 존속을 위해 노력해온 역대 정부와는 달리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여당인 세정치국민회의(현 새천년민주당)가 대폭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이 개정안은 당시 공동여당이었던 자민련과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운명에 처해졌다. 국가보안법은 텔끝 하나 다치자 않은 채 육체를 고스란히 보존하게 되었지만, 이런 상황은 50년을 넘어 과학을 유지, 발전시켜온 국가보안법 치자에서 보면 십자포화에 노출되어 운명이 위태롭던 것임을 밝힌다.

1) 이 글은 필자가 1999년 11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와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보완, 수정한 것을 밝힌다.

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 면 죽하다 할 것이다. „.”

즉, 이적단체라고 보여지는 조직의 구성원의 활동이 반국가단체를 굳이 이롭게 하려는 목적이 없다고 해도, 이는 국가(구체적으로 공안당국)가 판단하기에 그런 목적 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곧 이적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처럼 매우 자의 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서조항,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조문이 그대로 제7조 제3항으로 포함되어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이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시 문제 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다음에 살펴보아야 할 것이 선전·선동과 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의 의미다. 선전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령이나 활동을 주지시켜 이해를 촉구하거나 공명을 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 선동은 문서, 도화 또는 언동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국가변란행위를 실행할 결의가 생기게 하거나 이미 발생한 결의를 조장해 할 힘이 있는 자극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단체는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의적으 로 조직한 계속적 결합체인 '결사나 일시적 결합체인 '집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적어도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자회통솔체계는 갖춘 단체를 말한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 는 공동목적으로 만든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춤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

이는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쟁용된 것으로 보아도 확고한 판례이다. 1998년 2월 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현 부장판사)는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관련자에 11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무죄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7)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12 판결

8) 이른바 "삼민투" 사건,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84 판결

제7조는 제2조의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구성되며, 제7조의 다른 조항들은 모두 제1조를 전제로 성립한다. 따라서 제3항(이적단체 구성·가입)을 파악하기 위해서서는 제1조 제1항의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1990년 한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하여 헌정합헌결정을 한 후에 1991년 7차 개정 시에 삽입된 주관적 요소인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배우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단서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한법재판소에 의하면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우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단서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한법재판소에 의하면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조례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 5. 31>  
② 살계 <91. 5. 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 5. 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행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 5. 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청에 처한다. <개정 91. 5. 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 5. 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 5. 31>

5)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3 결정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이른바 '혁신대오'라는 조직은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단체로서 실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보안법이 규정한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적단체의 구성은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이 특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창설하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단체의 창설에 관하여 상호간 의사의 합치에 이르면 곧바로 구성죄가 성립된다. 가입이라 함은 기존에 창설되어 있는 이적단체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도의 조직성이 있으면 단체로 인정하였다.

① 결성식을 개최하여 장령·규약을 채택하고 의장단과 중앙위원회 등을 선출한 경우

② 대의원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지구위원회, 총무국, 조직국 등 구체적 기구를 갖추고 있는 경우

③ 연구원 명칭으로 회원 겸 연구소 형식의 단체에 원장, 부원장, 상담원 등 차체과 교육부서, 상담부서 등 부서를 두고 근로자·교육을 한 경우

④ 형식상 위원회 명칭으로 다른 단체의 하부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위원장, 분과위원장, 분과위원 등 독자적인 조직과 자회체계 및 임무를 갖추고 있는 경우

⑤ 4명의 구성원이 자자 북한방송청취, 마르크스, 레닌 원전 번역, 각종 자료 출판, 좌익운동권 상황파악 등 임무를 나누어 은밀한 장소를 마련, 학습연구를 계속하는 지하 학습단체를 만든 경우

이처럼 이전의 판례에서도 이적단체의 구성, 활동은 무칙이나 광범하게 적용되었 다. 조직체계를 만들거나, 교육을 하거나, 학습연구를 하거나 간에 이도 모두 이적활동이므로 광범하게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반

9) 법정학련 사건, 대법원 1993. 9. 28. 93도1730

10) 인민노련 사건,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도2067 판결

11) 일꾼노동문제연구소 사건,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12 판결

12) 전대협 정체위원회 사건, 대법원 92. 8. 14. 선고 92도1211 판결

13)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29 판결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내란이나 외환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명확한 개념으로 형법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은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고 있다. 통치형태와 경제질서 등에 대한 시시비비로 결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서 친보적 사상의 흐름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 그와 같은 인식도 확정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끌적인 인식으로 죽하다고 대법원은 보았다. 마련하고 있었다.

다음에 "정을 알면서"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된다. 7차 개정 후에는 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은 없으나 구 국가보안법의 해석과 별로 달리겠다고 보이지 않는다. 구법이 적용되던 때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 그와 같은 인식도 확정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끌적인 인식으로 죽하다고 대법원은 보았다. (당원 1983. 12. 27. 선고 81도145 판결, 1986. 9. 23. 선고 86도1499 판결 각 참조),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동조하는 위 제7조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체의 "세번"지를 제작하였으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원심은 이와 같이 동조죄로 처단한 것이므로 위 "세번"지의 내용에 피고인이 북한의 체제나 사상 또는 개인을 언급하여 친양한 구절이 있는지의 여부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이나 그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지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

6)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090 판결

#### 4. 이적단체 구성, 기업 조의 적용 경향성과 사례

가. 1991년 6월부터 1998년 8월까지 이적단체 분포

1991년 6월부터 1998년 8월까지 경찰청에 적발된 113개 이적단체를 운동사상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1) 민족해방(NL) 계열(50개), 유사한 조직은 합쳤음)

##### (2) 한총련

한총련은 가장 대표적인 이적단체이다. 특히 1996년 연세대 사건 이후 한총련에 대한 집중적인 탄압은 단지 NL계 학생운동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운동을 악화시켰다. 공안당국은 연세대 사건 이후 '한총련 조직시범집단수사본부'를 결성하였고, 1997년에는 이를 '공안사법집단수사본부'로 개편하였고, 1999년에는 '공안대체협의회'로 발전시켰다. 한총련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는 이전의 전대협에 대해서도 이적단체를 적용한 적이 없고, 1993년부터 1996년 8월 이전까지의 한총련에 대해서도 이적단체 협의를 적용하지 않았던 점에서, 또 전국의 대학생들의 자율적인 조직 전체를 이적 단체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또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지만, 공안당국은 한총련이 지도부가 세로이 구성되기도 전에 대의원 릴토 시한을 정하고 이를 어길 시 대의원 사당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바로 국가보안법 중 이적단체 조항에 의한 구속자가 많은 이유는 한총련 대의원 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구속 탓이다.

이 기간 중 한총련 대의원 등 간부로 활동하던 학생 중 637명이 입건되었으며, 이중 406명이 구속되었고, 224명이 불구속 처리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1994년 16명, 1995년 3명, 1996년 64명, 1997년 270명, 1998년 28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을 폐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3항만은 어떤 형태로라도 존립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매우 중요한 논점을 제공해 준다. 제7조 제3항 위반 행위는 다른바 '조직사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6년 이적단체로 규정된 이후 한총련 관련 압진기가 급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한총련이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법정희련(조국통일법민족체육연합) 사건 관련 입건자는 총 29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25명이 구속, 4명이 불구속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1992년 2명, 1993년 6명, 1994년 6명, 1995년 4명, 1996년 9명, 1997년 1명으로 나타났다.

한총련의 전신 조직인 전대협 관계 구속자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4명이 구속되었다.

##### (3) 학생 자주대오, 활동가조직 사건(18개)

NL계열에서 한총련 다음으로 자주대나 나타난 이적단체가 자주대오와 활동가조직이 있다. 이를 조직들은 1991년 청주대 자주대오 사건 이후로 거의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전국적으로 대학교에서 같은 이름의 이런 조직들이 활동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제기되었다. 강령과 활동이 비슷한 이들 조직은 NL계 학생운동 조직에 대한 경찰의 경쟁적인 조직사진화로 결피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며, 대체로 과거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까지 대거 뛰어서 사건을 만든다는지, 이미 활동이 중지된 조직을 이후 사건화 한다든지 하여 무리한 구속수사라는 점이 지적되고는 했다.

연도별로 자주대오, 활동가조직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91년 청주대 자주대오

##### 95년 경기대 자주대오 활동가조직, 부산대 자주대오, 우석대 자주대오, 원광대 구국자주대오, 충남대 활동가조직

##### 96년 경상대 활동가조직, 남총련 자주대오, 부산외대 자주대오, 상지대 자주대 오, 제주대 활동가조직

##### 97년 강원대 자주대오, 단국대 자주대오, 동아대 자주대오, 연세(원주)대 자주대 오, 인천교대 자주대오, 전북대학신대오

##### 98년 인제대 활동가조직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1998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1년 5월 31일 국가 보안법 7차 개정 이후 1998년 8월까지 입건된 이적단체는 모두 113개였으며, 제7조 제3항·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2,001명이었다. 이 중 구속은 1,531명으로 76.5%, 불구속은 405명으로 20.5%, 다른 기관으로의 이첩은 65명으로 3% 정도를 차지했다.

이는 7년여 동안 이적단체 구성·기업 혐의가 적용된 단체가 매년 15.6건 정도가 발생했고, 270~280명 가량이 입건되었으며, 한 사건당 약 18명 정도가 연루되어 피해를 입었음을 의미한다. 이 중에 210여 명 정도가 매년 구속되었음을 뜻한다. 이를 전체 국가보안법 구속자와 비교하여 보도록 하자. 법원 행정자치의 지로에 따르면, 91년부터 97년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총 2,551명이 구속되어 매년 364명 가량이 구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 경찰청에서 제7조 제3항 이적단체로 구속한 사람의 매년 210여 명으로 57%를 능가하게 된다. 여기에 다른 기관에 이첩한 경우와 다른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수사하여 구속한 경우를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 이적단체 구성 또는 기업과 관련하여 구속 또는 불구속 현황

구속 계	연도별 감기현황						
	구속	불구속	이첩	91년	92년	93년	94년
2,001	1,531	405	65	92	137	44	185

(경찰청 9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

(법무부, 99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자료)

- 98년 통계 민가협, 총회 보고서 - 99년 통계 제구성)

국기보안법 조항별 적용현황(구속)

구분	연도	1998년	1999년
목적수행 등		4	5
이적단체 구성·기업		335	250
이적표현을 호칭 통신 등		91	11
집·일·탈출 등 편의제공 등		21	10
기 타		11	10
계		2	2
		465	286

법무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998년의 경우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465명 중 426명이 제7조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이 중 335명이 제7조 제3항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와 약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체 국가보안법 구속자 중 2/3 이상을 이 조항으로 구속하였다는 이 통계는 바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가장 중요한 국가보안법 조항임을 드러내 보여준다. 1999년의 경우 9월까지 제7조 제3항으로 구속된 경우는 215명이므로, 전체 국가보안법 구속자와의 84%가 이에 해당되어, 오히려 그 이전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1990년대 대부분의 기간 중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이들의 최소 50% 이상이 바로 제7조 제3항에 의해 구속되었고, 갈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다. 즉, 공안세력은 제7조 제3항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바로 제7조 제3항을 공안세력들이 꼭 수호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1999년 새정치국민회의(현 새천년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도 바로 이런 공안세력들의 의지, 이해관계를 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나마.

이런 경향성은 1999년도에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부와 회원 12명을 체포, 9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했다. 그들에게 적용된 것은 과거 민청련 활동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제7조 제3항 이적단체 구성 기업의 것이다. 특히 김철은 공소사효를 유지하기 위해 안민청 설립 시기를 1992년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시민단체의 시민봉사활동마저 이적활동을 끌었던 것이다. 김철은 안민청의 초기 민청련 산하 청년 조직으로 매년 민중학교를 개설하고, 노조 간부와 학생, 노동자들에게 범종법적 유물론, 조직론 등 사상학습을 시킨 것과 1998년 노동절 대회에 참석한 것 등을 이적행위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안민청은 “10여 년 전 양지역에서 민주화와 사회진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여온 진보적 청년단체를 10여 년이 지나 문제삼는 것은 수사기 관의 자의적 범죄용”이라고 비난했다. 시민들을 위한 다른 활동은 불문에 부치고, 오로지 일부의 문건을 문제삼아 그것이 유일한 활동인 양 호도하여, 이적단체 혐의로 기소했다는 것이다.

안민청 구속자들은 1심에서 8명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김종박씨는 2심에서 징형유예로 풀려났다. 안민청 사건은 공안기관이 성격이 바뀐 단체의 과거 활동을 문제삼아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표적인 사례다.

#### (4) 사례 3 - 민중정치연합(민정련) 광주지부 사건

1995년 11월 21일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사노맹 호남지역 계전 기도’ 혐의로 전 민중정치연합 회원 김동성(29)씨 등 12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영장을 기각하여 모두 풀려났다. 그런데 11월 23일, 보안수사대는 다른 판사에게 다시 청구하여 일부만은 영장으로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관련자를 수배하였다. 또한 1996년 1월 12일과 1월 20일 같은 혐의로 5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사노맹 호남지역 계전기도’라는 혐의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광주지검 공안부는 같은 해 12월 “민정련이 사노맹에 동조했다”라고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사노맹이 1994년 4월 공식 해체를 선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노맹 등조회에 의마저 입증하기 어렵게 되자, 1996년 4월 1심 선고 직전 “사노맹이 아닌 북한에 동조했다”라고 공소 내용을 변경했다. 그러나 이들이 ‘북한에 동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김철이 이를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5월 광주지법은 재판부 직권보석 결정으로 모두 석방했다.

한편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6월초 이 사건으로 수배됐던 이호성(28)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이들은 7월 2일과 3일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이와 같은 무리한 실적상기식 이적단체의 남발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대체로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직들은 1980년대식의 지하 비밀법 활동 했던 단체라기보다는 공개적인 활동을 해왔던 조직들이며, 따라서 경찰을 비롯한 공안당국은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주시하고 있다가 필요한 순간 조직을 뒤처리 사건을 부풀리곤 했다. 이는 공개적인 이적활동을 그동안 방기해왔다는 말이 되며, 따라서 이적단체라는 것은 매우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전보민중청년연합 사건의 경우 그 산하 소속단체들인 사회민주주의청년회(1994년 5월), 우리청년회(1994년 12월), 부천민주노동청년회(1997년 10월), 관악노동청년회(1998년 2월),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1998년 6월)들을 모두 이적단체로 규정, 관련자들을 구속한 뒤 1998년 6월 상급단체인 전보민청마저도 이적단체로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이는 공안당국이 지금이금 이적단체 사내를 벌였던 좋은 예이다.

#### (2) ‘내부의 적’을 겨냥하고 있다.

이적단체로 공안당국에 적발된 경우 북한과 연계된 이적단체가 그와는 별도로 자살적인 이적단체가 비슷비슷한 분포로 나타난다. 후자의 경우는 당연히 남한 사회 내부의 비판세력이라는 점에서 공안당국이 보았을 때 당연히 내부의 적이다.  
하지만 공안당국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강령으로 하고 있다는(대다수의 NLG 조직) 사건 관계자들이 이를 부정한다) 단체들의 경우들도 사실은 북한과의 연계, 북한을 친양·고무·동조 등을 할 목적으로 설립하였기 때문에 처벌하겠다고 보다는 남한 사회 내부 권력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이유로 처벌했던 측면이 더욱 강하다. 이는 무리하게 수사과정에서 북한과의 연계를 입증하기 위해 서적 등의 표현물을 들이대지만, 결국 활동 자체는 주체사상의 실현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활동과정에서 일반적인 학생운동이나 노동단체, 세이단체의 수준을 넘지 않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점을 살피해 볼 때 북한을 끌어들여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고전적인 수법을 적용한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총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1) 사례 1 - 동아대 차주대오

##### 부산지방경찰청과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는 1997년 9월 12일, 동아대학교에서

반미자주화를 기치로 내걸고 종학생회를 장악,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학내외 시위 등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동아대 ‘차주대오’를 적발하고, 동아대 세화생과 출입생 12명을 구속하였다. 구속자 중 5명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북한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이적단체 구성 혐의와 간첩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북한의 저령을 받는 간첩이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구속자들은 “수사기관이 명확한 근거나 증거없이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간첩단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노동당 입당 사실을 계속 부인했다. 사건 당시 수사기관은 기족들의 접견조차 허락하고, 구속자들에 대해 구타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구속자들의 집뿐만 아니라 친인척의 집까지 압수수색을 수 차례 반복했으며,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불구속을 전제로 수사협조를 화유하기까지 하여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법원은 자백만으로 노동당 입당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리한 수사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 (2) 사례 2 -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은 1983년 창립된 민주화운동청년연합(초대 의장 김근태, 민정련)의 네 번째 지부로 1988년 설립되었다. 이후 1992년 민청련에서 탈퇴하였고, 시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주로 진행해왔다. 1991년 5월에 설립한 안양시 민학교를 통해 1998년 2월까지 2천 명에 이르는 시민들에게 한글, 영어, 한자, 수학, 컴퓨터 등을 가르쳤다. 또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단 활동, 아간학교, 무료법률상담, 의료사업, 도서실 운영 등의 활동을 주로 전개해왔다.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1998년 6월 2일 김종박씨 등 이 단체의 주요 간

15) 민주화실천기록운동협의회(2000). 「1999년 국가보안법 적용 및 구속실태에 관한 고서」. 「양심수 문제를 중심으로 본 1999 인권실태 보고서」, 23쪽. 위 보고서에서 보고되는 국가보안법 전 과정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4장 국가보안법 조항별 사례 분석을 참조할 것.

의 의식을 고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이었다. <사례 3>은 경찰의 물리력에 대항하는 학생들을 마치 어마어마한 무력투쟁을 준비하는 단체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이처럼 공안당국이 판단권대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이나 투쟁을 전개해온 조직들을 처벌해왔던 것이다.

#### (3)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단체는 진드리지 않는다.

이적단체를 계속 양산해 냐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공안당국은 한총련을 제외하고는 소규모의 학생, 노동, 청년 단체들을 주 표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가령 시민단체나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들은 이적단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가령 전국연합이나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의 경찰과 이적단체로 규정된 위 단체들의 강령이나 활동, 주장의 차이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 안전하게 활동하는 단체들의 경우 이적단체로 규정, 처벌된 단체들의 주장보다도 더욱 급진적인 주장은 하는 경우 우들이 있다. 이는 교수나 변호사 등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있는 인사가 활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단체들은 거의 이적단체 적용이 없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힘이 미약한 조직이라는 점이다. 80년대는 나름대로 조직적인 활동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친 조직들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던 경우가 있었지만, 90년대 이후는 활동이나 영향력이 미약한 단체들이 주로 공안당국의 사냥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볼 때, 공안당국의 태도가 매우 조심스러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적단체의 규정을 매우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1990년대 후반 이후로 넘어 올수록 두드러진다.

#### (4) 여전한 강령 등의 조직과 인권침해가 빈번하기 나타난다.

90년대 이적단체들은 실제 활동을 활발히 했기 때문에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다는 공안당국의 실적 쌓기에 의해 화생되었다는 측면이 더욱 강하다. 학생들의 '자주대오' 사건들은 천연일률적으로 경찰이 비슷하다. 1994년의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의 경우는 '중부지역당' 사건 때의 경찰이 그대로 인용되었고, IPD계 사건에서도 예모나 내부 조직원들의 토론 자료들이나 단체 기관지들에 나타난 특정 문구를 교단체나 조직의 강령으로 수사당국은 무리하게 께 맞추기를 한 사례들이 종종 드러난다. 그러나 대체로는 반박서를 통해 "청년은 1995년 가을, 출범하면서 자체의 강령과 규약, 단체 책임자와 단체 책임자들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는데, 경찰은 한 줄에 한 번씩 혁명조직 운운하는 듯지도 보지도 못한 강령을 이적단체의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이들이 남한사회 변화를 위해 노동계급을 포섭할 목적으로 조직원 10여 명을 서울 구로공단 등에 위치한 취업시키기도 했으며 군부무 자체를 '군침투·전술'로 이용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체로는 반박서를 통해 "청년은 1995년 가을, 출범하면서 자체의 강령과 규약, 단체 책임자와 단체 책임자들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는데, 경찰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군침투·전술이라고 발표를 하는가 하면, 군대간 친구들이 대동제나 고연세 때 휴가를 나온 것을 두고 조직원들의 회합을 위해 휴가를 나았다는 억지 주장은 했다"며 경찰의 이적단체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실제로 청년은 매주 토요일 집회선고를 한 뒤 미도파 백화점 앞에서 '시민광장'이라는 모임을 하는 등 공개적인 활동을 해왔다. 또한 청년이 침립할 당시 대체로는 수첩 등을 통해 공개한 강령의 전문에는 경찰이 발표한 강령의 내용은 찾아볼 수 있고, 경찰이 조직원 상호간에 암호로 '1004(당신의 천사로부터)', '8255(밸리 외주세우) 등 스포츠 신문이나 일반인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세시한 것은 경찰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sup>6)</sup>.

#### (4) 사례 2 - 고교생 주체사상 의식화 단체 '샘'

'샘' 사건은 고교생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주체사상을 학습했다는 데서 큰 충돌을 주었던 사건이다.

다. 이들 이적단체들의 사건에는 반드시 밤색수사와 폭행 등 구속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뒤따르고 있다. 줄어들기는 했으나, 불법 수색이나 도·검·포·리·화·회·유·와 험박 등 불법적인 사례들이 나타나게 된다.

#### (7) 사례 1 - '자주대오' 사건들

1995년 2월 부산대를 시작으로 경기대(3·15), 원광대(5월), 전주우석대(8·29), 충남대(10·18) 등 전국 각 대학의 졸업생, 군부무 중인 군인, 학생들이 무더기로 구속되었다. 이들이 공통점은 학생들의 선거에 의해 당선된 종학생회의 간부들이었다는 점, 또한 2, 3년 전에 종학생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로 구속 당시에는 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군부무 중인 군인들이라는 점이다.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의 경우 10명이 넘는 이들을 긴급구속할 당시에는 대부분 국보법 제7조 제3항 혐의를 적용했다가, 이후 기소단체에서는 이적단체 혐의는 삭제되고 단순 이적표현물 소지나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축소되었다.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유죄 판결이 난 경우에도 1심 재판 결과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또 실행 선고들도 다른 조직 사건과는 달리 6월에서 8월의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것에 그쳤다. 전남대 자주대오 사건의 경우는 출입한 후에도 조직원으로 남아 후배들의 사생활과 조직 생활을 지도해왔다고 경찰은 주장했지만, 본인들은 출입 후 친목제를 만들어 출입식 때 단 한 차례 모임을 가졌을 뿐이라며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를 중에는 94년 당시 종학생회 섭외부장, 총무부장 등 실제 조직이나 특강파는 거의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활동한 간부들까지 포함되었다. 더욱이 구속자 전원이 전남대 출입생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남총련 자주대오라고 발표해 남총련 흡집내기 수사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사건 구속자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 (4) 사례 2 - 한국대학생회연합(한총련)

한국대학생회연합(한총련)은 1996년 11월 광주전남지역종학생회연합(남총련) 선하 전투조직 등을 시무실에 비치, 학습하고, 각종 행사를 통해 주체사상을 찬양하였다는 이유로 이적단체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단계에서는 이적단체 규정이 빠진 채 제7조 제1항과 제5항만 적용되었다.

#### (5) 사례 3 - 남총련 '민족해방군' 사건

경찰은 1994년 9월 애초에 고영국 등이 1992년 11월 고교생들의 민족문화 연구라는 표면적인 목적을 앞세워 단체를 결성하고, 주체사상 학습서인 <사람과 세계> 등을 시무실에 비치, 학습하고, 각종 행사를 통해 주체사상을 찬양하였다는 이유로 이적단체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단계에서는 이적단체 규정이 빠진 채 제7조 제1항과 제5항만 적용되었다.

경찰이 1994년 9월초부터 10월말까지 구로와 서울 남부지역의 고등학생들에게 영장없이 청사들을 수업시간에 들어와 학생들을 연행하고, 교사를 미처 청사들 의 수사에 협조하여 큰 물의를 일으켰다. 수십 명을 불법으로 구금, 폭행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이적단체로 매맞추어 했다. 이 사건으로 3명이 구속되고, 6명이 불구속 입건되었고, 학교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학생들을 무더기 징계했지만, 경찰은 기소단계에서 이적단체 혐의를 슬그머니 빼버렸다.

#### (6) 사례 4 - 남총련 '민족해방군' 사건

전남지방경찰청은 1996년 11월 광주전남지역종학생회연합(남총련) 선하 전투조직인 민족해방군이 1993년 결성되었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폭력투쟁 등을 전개해온 이적단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95명을 구속하고, 83명을 수배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속자들은 "민족해방군"이라는 조직은 만들어진 사실이 없고, 대체로 경기도 등 경찰의 무리력에 맞서 최소한의 방어의 대열을 보호하기 위한 차위수단으로 전남대 오월대, 조선대 녹두대, 등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1996년 11월 조선대 김영철씨 등 5명이 구속되었는데, 조사 결과 이들이 민족해방군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학내 집회를 몇 차례 지켜보거나 단순 동침했던 것으로 밝혀져 모두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경찰과 경찰이 무리하게 두 차례나 구속기간을 연장하며 이들의 민족해방군 가입 사실을 밝히려 했으나 실패한 것이다. 민족해방군 구성·가입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되었던 경우도 모두 1심에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선전·선동할 것을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결국 제7조의 친체가 되는 제1항을 제3항에 포함하여 강화한 것이었다. 이는 이미 예견되었던 것으로 제7조의 원천한 사례를 허자니 이적단체(조직 사건)를 처벌, 처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며, 이는 결국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처벌할 수단은 남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안세력들의 이해관계에도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이다.<sup>19</sup> 결국 정부가 이전부터 주장해 온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체제전복의 선전·선동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개정론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런 개정 방향은 남북관계가 급진전환·정치상황에서 전쟁률 범개정 국면에서도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와 같이 제1항을 포함한 제3항의 존치라는 개정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먼저, 강압수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제7조 제1항의 친·교·고·나·제5 항의 이적표현을 처벌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적활동을 한 단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즉, 지금껏 대부분의 이적단체들을 처벌·처벌하였을 때는 이적단체를 입증하기 위해 대체로 표현물이나 접두 등의 범언 등을 주로 문제삼아 왔다. 이를 법원도 증거로 인정하여 있던 경향이고 보면, 이들을 제외한 어떤 것으로 이적 활동을 한 단체로 규정하여 처벌할 것인지 공안당국의 입장에서는 난처해지게 된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리한 강압수사가 도입될 수 있는 것이다. 공안당국이 강압수사에 의한 진술의 확보에 주력할 경우, 이는 인권침해를 광범위하게 끌어는 수단이 될 위험성이 있다.

둘째, 예전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단체 조항들과 규정들이 있다는 점에서 문재가 있다. ‘국가의 안전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일면서’라는 단서가 갖는 자의적 해석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또, 선전·선동 활동이라는 것 이 뒤따르지 않는 사회운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김회도 시위도

19) 김종서, 위의 자료집 48~52쪽. 김종서는 정부와 여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작업에서 제7조 제3항을 존치할 것을 예전하여, 제1항 포함론, 제3항 개정론으로 정리, 각각의 경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여당의 흐름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이 글은 국가보안법 개폐운동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이다.

캠페인도, 출판이나 기고활동도 모두 선전·선동 활동이라고 판단할 때, 결국 단서 조항을 두어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는 그대로 살려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는 지금껏 법원에 의해 배려졌던 판례들을 계승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남겨두겠다는 계산이 걸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이는 다시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 정부가 시민적·정치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 결시의 자유 조항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직접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적단체 문제로 제소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결국은 폭력도 수반되지 않는 평화적인 선전·선동 활동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지난해의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다.<sup>20</sup> 다시 개정안대로 규정된 이적단체는 당시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 악법으로 국가보안법이 규정될 가능성은 높아진 것이다. 결국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했다고는 하지만, 제7조 제3항을 그대로 두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는 수준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보안법 제7조의 대안은 어떤 이유로 요건을 강화하여 인권침해를 줄일 것인가라는 소극적인 접근 자체로는 수반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의 상정인 이 조항은 완전히 삭제됨으로써만 그 독소적인 요소를 거제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21세기 무려 50년 넘도록 우리 사회를 가꿔온 국민보안법의 개폐를 논하면서 굳이 가장 문제가 많은 조항을 존속시키려는 의도를 불순하다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 결국은 정부와 기득권 세력의 이해에 반하는 세력을 처벌할 마지막 수단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드러난 것이다.

새로운 세기를 맞고, 인권의 시대를 열어 가는 것이 역사의 필연이라면 인권의

이런 단체 중에 가장 징중적인 단임을 받고 있는 단체가 한총련이다. 법무부의 99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997년부터 99년 8월까지 한총련 사법처리 대상자 980명 중에서 796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448명을 구속했고, 326명을 불구속했다. 98년 413명의 전체 국가보안법 구속자 중 한총련 관련자가 182명으로 44%에 달했던 것에서 보듯이,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수가 현 정권에 들어와서도 줄어들지 않는 것은 한총련 관련 구속자 많기 때문이다.

한총련은 차주·민주·통일이라는 1980년대 민족민주운동권 내에서 정립된 운동이념으로 ‘한총련만의 강령도 아니고, 이를 이유로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한총련의 전신인 전대협도 이적 아닐 수 없다. 또 이런 이유로 이적단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한총련에 대한 구속자 수밖에 없지만, 전대협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적이 없다. 대학생들의 자율적인 건 이전의 한총련에 대해서도 이적단체로 규정한 적이 없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었다.

공안집행수사본부는 매년 한총련이 구성도 되기 전부터 단임을 자행하고, 경찰들 은 한총련 수백명들의 검거를 위해 미행과 부모들에 대한 협박과 회유, 불법적인 압 수수색을 일삼고 있다. 이는 98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1997년 전체 경찰 특진자 823명 중 28.9%인 238명이 한총련 수백명을 이유로 특진한 것에서 보듯이 한총련 대의원들이 경찰들의 특진을 위한 미끼로 이용되고 있으며, 경찰들은 한총련 학생들을 검거하기 위해 불법 행위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총련에 대한 단임은 학생운동을 단임함으로써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약화시 캐비는 공안수구세력의 의도가 깨임된 불순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다) 사례 3 : 한국노동청년연대(한청련)

서울경찰청 보안부는 1997년 6월, 공산주의 혁명을 주장하고 국가변란을 선동하기 위해 결성한 이적단체 한국노동청년연대 회원 9명을 구속했다. 한국노동청년연대는 1996년 2월 서강대에서 칭립총회를 갖고 ‘노동자기·주인되는 세로운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는 조직구성과 강령을 채택한 뒤 의식화·학교를 개설, 노동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킨 협의를 받았다.

그러나 구속자들은 “97년 제2기 총회에서 칭립 당시의 규약을 전면 삭제하고, ‘참된 민주사회’의 실현, 진보정치의 발전,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의 확대와

올바른 민족의 통일’이라는 내용으로 개정해서 조직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허제된 ‘공동체 노동청년회’, ‘800만 노동자와 함께 하는 노동청년회’와 한청련을 연계시키고, 이미 폐기된 1기 규약을 문제삼아 이적단체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 5. 제7조 제3항 존속의 위험성

1990년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과 이에 따른 1991년 7차 개정 이후 국가보안법 적용의 경합성을 전혀 딜리지지 않았다. 1993년 경영심 청부·집권 체제에만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일시적으로 줄었을 뿐이며, 제7조 제3항 등을 앞세운 단임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특히 제7조 제3항 이적단체 규정은 국가보안법 제7조가 조약에 부합할 수 있는 형법이 없으므로 사실상 폐지를 관고한 것이며, 특히 단체적 폐지라는 것을 관계하여 해석한다면 제7조를 특별히 강조하여 지목한 것이다.

한반도에서도 급격하게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남북관계가 회회의 단체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제2조를 비롯한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한 여타의 조항들은 사실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내부의 적’을 합법적으로 단임하기 위한 수단인 제7조일 것이며, 그 중에서 제3항은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반영하여 지난 해 새정치국민회의는 제7조의 모든 조항들을 삼입하여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존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했다.<sup>21</sup>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일면서

17) 민주화실천기록운동협의회, 98년 총회 자료집에서 인용

18) 제1항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추가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가령 경기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거나 공공연히 북한을 친양하고 다니는 극단적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했다.

# 국가보안법 7조란 무엇인가?

## [1] 국가보안법 제7조 전문

### 제7조【찬양·고무 등】

-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 ② 삭제 <91.5.31>
-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
-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 제7조는 모두 7개항으로 되어 있다. 그 중 핵심적인 조항은 제1항에 규정된 찬양고무 동조죄, 제3항에 규정된 이적단체구성가입죄, 제5항에 규정된 이적표현물 관련죄이다.

\* 제4항에 규정된 허위사실유포는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 제2항은 국외공간계열에 관한 것이었으나 91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 제6항은 위 세가지 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 제7항은 이적단체 가입구성에 대한 예비, 음모죄 처벌규정이다.

## [2] 국가보안법 7조의 내용과 처벌사례

### (1) 찬양, 고무, 동조 등 죄

이 조항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행위'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이다. 주관적인 요소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가 요구된다.

원래는 국가변란 선전선동은 처벌되지 않았으나 1991년의 개정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이는 반국가단체(대개 북한)와 무관한 체제비판세력을 처벌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다.

대체로 이 조항은 국민에게 정신적 중압감을 주며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효과를 냉고 있다.

### 처벌사례

\* 가을을 철거하려는 당국자에게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는 언사를 한 경우.

## 소위 '영남위원회사건'에 관하여

정재성(변호사)

### 1. 들어가기에 앞서

대원칙인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조약들에 맞게 이 기회에 대대적인 손질을 해야 한다. 이적단체 규정은 결국은 민주시화의 결사의 자유, 나아가 본질적으로 사상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것이므로 이의 폐지 또한 당연한 것이다. 모든 것에 우선하는 인권의 가치와 보편성을 생각한다면 이번 기회에 최소한 제7조의 완전한 삭제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세 세력들이 자유로이 결사(結社)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전파하고, 이를 사회적인 토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마저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50년 전의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인권원칙도 수용할 수 없는 수준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운동에서 이제는 제7조 제3항이 '어떤 식으로든 존속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하며,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의 성패는 제3항을 포함한 제7조의 완전한 삭제를 해내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해도 진실 단정이 아니다).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김창현이 포함된 울산지역과 부산지역의 노동·사회운동가 15명이 1998년 7월 22일경 체포되어 김창현은 7월 23일 체포됨(반국가단체 수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아직도 일부 사람들에 대하여는 재판중인 사건을 말한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 최초의 조직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파고인 중에 민선 구청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판받는 사람의 숫자도 15명이나 되어 결코 적지 않고, 재판과정에서 각종 새로운 범률적 쟁점(강청의 험법성 여부, 컴퓨터 디스크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이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 등)이 많았으며, 또 상당수가 무죄판결을 선고받는 등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다. 이에 위 사건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제으로 번호해 온 번호사로서 위 사건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위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사건의 경위

### 가. 사건의 발생

1998년 7월 22일 새벽 6시를 전후하여 부산지역의 노동운동가 3명, 울산지역의 사회·노동운동가 13명, 울산대학교 졸업 및 재학생 4명이 일시에 집, 사무실 등에서 긴급체포되었다. 이 중 학생들은 울산에서, 그 외의 사람들은 부산지방경찰청 보안분실에 옮겨져 조사를 받게 된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부산 민기협의 전화연락을 받고 부산에서 본인과 최성주 변

21) 박래근(2000), '21세기에도 국가보안법 나라인가', 「당대비평 10호」, 삼인출판사, 543~549쪽. 이 글에서 필자는 제7조의 우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 경찰관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면서 “우리나라 법이 빨갱이 법보다 못하다”고 발언한 경우.
- \* “예비군 훈련이 지긋지긋하다.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내일 판문점 견학을 가는데, 그곳에 가서 북한으로 넘어 가버리겠다”는 농담.
- \* “6.25의 도발은 소련놈과 미국놈의 핵동에 의한 것이다”는 언사.

### (2) 이적단체 구성, 가입 죄

찬양, 고무 등 및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면 처벌된다. 단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조직한 계속적 결합체인 ‘결사’나 일시적 결합체인 ‘집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적어도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지휘통솔체계는 갖춘 단체를 말한다.

#### 처벌사례

- \*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사례를 보면 거의 모든 단체들은 이적단체의 규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강령으로 내세우지 않고, 민주나 사회의 개혁을 강령으로 내세운다 해도 공안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적단체가 될 수 있다.
- \* 인천민주노동자연맹 사건, 진보민중청년단체연합 사건 등은 북한에 매우 비판적인 단체인데도 이적단체로 처벌받은 예이다.

### (3) 이적표현물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죄

찬양·고무등 및 이적단체구성가입 등을 목적으로 문서 등 표현물을 소지·제작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된다. 이적표현물은 문서(서적, 유인물, 벽보, 전단, 스티커), 도화(민중미술계의 미술작품), 기타의 표현물(문서, 도화 이외에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시한 일체의 물체, 컴퓨터 디스크, 영화, 사진 또는 그 필름, 음반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및 조각물 등)이 해당된다.

#### 처벌사례

- \* 특히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적단체 등의 협의를 두고, 체포·구속하였다가 이 협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이적표현물’인 책 한 권을 소지한 이유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점이다. 1995년 불발에 끝난 박충렬, 김태년 간첩사건 등 사례는 많다.
- \* 이적표현물인지 여부는 공안문제연구소나 민주이념연구소 등 공안기관의 부설기관이 판정하기 때문에 이적표현물의 범주에 포함되는 표현물은 수없이 많다. (조정래의 <태백산맥>, 김학철의 <모내기>, 경상대 교수들의 <한국사회의 이해>, PC 통신상의 강릉 북한 잠수정에 대한 의혹 제기, 서준식 구속을 가져온 <레드 헌트> 상영 사건등).

### (3) 국가보안법 7조의 운영실태

5공화국 당시 전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2,232명이고 기소된 사람은 1,565명이었다. 이중 7조로 구속된 사람은 2,072명, 기소된 사람은 1,495명이다. 즉,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7조로 구속된 사람은 92.8%, 7조로 기소된 사람은 95.5%였다. 이런 5공화국 때의 비율은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1년간 총 413명의 국가보안법 구속자 중 92.2%에 7조가 적용되었다. 더욱이 검찰은 영남위원회 사건 15명에게 당초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3조)죄를 적용하여 구속했지만, 2심에서 공소유지가 어려워 모두에게 이적단체 구성(7조 3항)을 적용했기 때문에 7조 적용 비율은 더 늘어난다. 즉, 국가보안법 전체 구속자 중 95.8%에게 7조가 적용된 것이다.

###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1년간 국가보안법 죄목별 구속자

각 조항	7조 (고무·찬양)	3조 (반국가단체)	4조 (국가기밀)	6조 (잠입탈출)	8조 (회합통신)	9조 (편의제공)
인원	381명	15명*	2명	3명	8명	4명

(출처: 민변등,『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1999)

\* 반국가단체 15명은 이른바 ‘영남위사건’으로서 2심에서는 검찰이 ‘반국가단체’ 적용을 포기하고 ‘이적단체’로 공소변경을 했으므로 3조는 0명, 7조는 396명이 된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은 거의 모두 7조에 의한 것이다. 즉 국가보안법은 ‘안보’나 ‘남북 대치상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점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보안법은 논리적인 구조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2조와 3조의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조항이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현실에서 ‘내부의 적’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는 7조가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 (4)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국제적인 인권단체나 유엔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은 의사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 집중되어 있다. 또,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지나치게 긴 구금기간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비판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했다는 명백하고도 현저한 증거가 없는 한, 사상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5년 아비드 후세인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보고서, 1998년 박태훈·김근태씨 제소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통보).

따라서 국제사회는 7조가 갖는 광범위한 인권침해 요소는 제거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점진적인 개정 또는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어느 경우에도 7조 삭제는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양심수의 문제를 비판할 때 그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의 7조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 (5) 김대중 정부 하의 국가보안법 7조 사건

#### \* 단순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 구속;

대동출판사, 풀무질 출판사 대표 등의 구속, 한양대생 하영준씨 컴퓨터 통신 하이텔 게시판에 표현물 게시 구속.

#### \* 이적단체 주요사건;

국제사회주의자들, 북부노동자회, 부산인제대자주대오, 안양민주화청년운동연합, 전국학생연대, 진보민중청년연합, 영남위원회, 울산대 혁신대오, 범민련,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등. 이들중 1심에서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남. 영남위원회는 3조 적용되다가 2심에서 7조로 바뀜. 이미 예전에 활동했던 내용을 갖고 무리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 \* 한총련 대의원의 대량 구속;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한총련 대의원 182명을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 기소함. 이는 전체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44%에 해당함. 한총련 학생들의 검거로 특진한 경찰관이 전체